

2024년 회사법/자본시장법 개정 분야 논의

| 주주 권리/이익 강화를 위한 개정 중심으로

2024. 1. 30.

법무법인(유) 광장 | 변호사 김경천





목 차

1 자본시장법

- 의무공개매수
-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 제도

2 회사법

-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 자기주식 의무처분 등

자본시장법 개정 분야

1. 의무공개매수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2.12.21.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시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추진 발표
 - ✓ 상장회사 M&A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 존재
 -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 2023. 5. 30. 의원입법 형식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3. 11. 15.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었음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내용

■ 적용요건

주식인수예정자("인수자")가 ① **상장회사**의 ② **의결권 기준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③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적용 예정

- ✓ 상장회사를 지배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X
- ✓ CB 등 지분연계증권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 (특히 CB/BW의 경우 권리 행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25%를 계산해 의무발생 여부 판단)
- ✓ 이미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가 추가 주식 취득 시 공개매수 의무 발생 X

1. 의무공개매수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내용

■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내용

인수자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행매수 후 15일 이내에 공개매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공개매수의무수량: **'50%+1주 이상'**

(예시) 인수자가 30% 선행매수한 경우 → 20% + 1주 이상 의무공개매수 하여야 함

✓ "선행매수일"로부터 의무공개매수기간 종료일까지는 별도매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 의무공개매수 가격

✓ 의무공개매수 시 공개매수 가격에 관해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 →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

✓ 외국 입법례 중 이른바 'Best Price Rule'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선행매수일로부터 과거 1년간 인수인이 매수한 최고거래가격"과 "의무공개매수신청서 제출일 전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중 높은 가격

1. 의무공개매수

(3)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시기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 빨라야 2025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개정법 '공포'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ex. Call Option)의 경우는 적용 예외

(4) 시사점 등

- 기업 M&A 거래 상당한 Market Practice의 변화가 발생 예상
- 한편, 지배권 프리미엄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논리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일반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
-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능하므로, 입법 경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2. 내부자(주요주주 및 임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1) 개요

- 2023. 12. 28.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의 주식 대량 거래(블록딜)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2024. 7. 예상**)에 시행될 예정
-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
 - (i) **직접규제**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174조)
 - (ii) **사후적 규제**로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172조), 10%보고(173조)
 - (iii) **사전적 규제**로서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의 지분거래계획에 관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

2. 내부자(주요주주 및 임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2)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신설)

상장회사의 ① 주요주주 및 임원 등 내부자가 ② 당해 상장회사 발행 주식 등을 ③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총칭하여 "거래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적용요건

- ✓ 내부자: (i) 주요주주: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ii) 임원: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포함
- ✓ 상장회사 발행주식 등: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CB, BW, 주식예탁증권 등 포함
- ✓ 거래: 매수 또는 매도를 포함함. (단, 시행령은 상속, 주식배당 등 예외 규정)

-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 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2. 28.)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함

- * **사전공시대상 거래규모**: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 * **공시의무 면제 내부자**: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 * **공시기한**: 매매예정일 30일 전

2. 내부자(주요주주 및 임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2)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의 내용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신설)

- 소위 '쪼개기 매매' 방지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
-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보고를 금지 & 보고된 거래계획 이행 부과 의무**
 - ✓ 단, 거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한 거래금액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 가능
 - ✓ 사망,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 가능
-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처벌

(3) 시사점 등

- 금융위원회: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함으로써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
- 다만, 주요주주 등에게 주가하락/상승 등 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시킬 근거가 부족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매시기를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도 도입 반대견해도 존재
- 시행령 등 입법 경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회사법 개정

1.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 도입배경

- 'A사 물적분할 사례'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수주주의 보호가 큰 문제가 되었음**
 - ✓ 2020년 A사의 일부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 공시 후 임시주총 결의를 통해 완전자회사 B사가 설립됨
 - ✓ 위 물적분할 공시 전일과 당일 동안 A사 주가는 11.16% 하락, 이후 B사 주가는 상장 당일 공모가에 비해 68.3% 상승한 반면, 모회사인 A사 주가는 전일 대비 8% 정도 하락
 - ✓ 즉, 모회사 A사의 지배주주는 여전히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자회사 상장의 의미가 크지만, A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기에 자회사가 상장하더라도 모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한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가져간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존재
- 이에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물적분할 시 모회사 소수주주 보호방안 논의

1.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후술)**
2. 상장회사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위해 신주 모집 시, 모집신주의 50% 이상을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여(후술)**
4.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피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 개정안의 내용

■ 비상장회사 물적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상법 제530조의12 제2항 신설)

-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이전하는 총자산액(분할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기준)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회사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2022. 12. 20. 개정, 2022. 12. 27. 시행)으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제도가 시행되었음(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

(3) 예상 도입시기 및 효과 등

- 법무부는 본래 2023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 도입시기는 미정
- 물적분할이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의 합리성 인정 가능
다만, 모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소수주주 축출 수단으로 악용가능,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물적분할의 독자적 활용가치 하락 등의 한계도 존재

2. 이사의 충실의무

(1) 도입배경

- 현행 상법(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 통설 및 판례는 현행 규정의 문구 속에 '주주도 보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
- **기존 제도의 미비점**
 - ✓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 ✓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 제기**

2. 이사의 충실의무

(2)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개정)

현행상법	개정안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즉,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u>주주의 비례적 이익</u>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u>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u>를 부과하려는 것임 ✓ '<u>주주의 비례적 이익</u>' →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3) 예상 도입시기 및 효과 등

-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개정 여부에 관한 실무의 관심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개정 여부/개정 시점은 미정
- 2024. 1. 2. 한국거래소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3. 자기주식 의무 처분 등

(1) 현행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관

- 2012년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 취득 규제 완화:
 - (i)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에서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및
 - (ii) 특정목적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 그러나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해 **회사의 소각/처분의무 없음**
- 자기주식의 처분은 정관에서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정한 바 없다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상법 제342조) → 즉,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 X 법령상 별다른 요건/통제 장치 없이 이사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는 지적 존재

(2) 기존 자기주식 제도의 문제점

-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 수단/주주환원 수단' 보다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혹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지적
 - ✓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
 - ✓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존재(백기사 활용)
 - ✓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기주식 맞교환(상호주 보유)을 지배권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

3. 자기주식 의무 처분 등

(3) 자기주식 제도 개선 논의

- 금융위원회는 2023. 6. 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

1. 자기주식의 강제 소각 의무화 or 10% 등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유 허용 방안
2.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안(후술)
3.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포함 자기주식 관련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4. 시가총액 등 지표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방안
5.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의무 강화

3. 자기주식 의무 처분 등

(4) 자기주식 처분 관련 제도 정비 (상법 제342조 제2항, 제3항 신설)

개정안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341조의2 및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자기주식취득 제도와의 균형)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제3자 신주발행과의 균형) 제3자 신주발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를 자기주식 제3자 처분 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본래 하급심 판례들은 자기주식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호 결정 등)
 - ✓ 그 외 2주 전 자기주식처분 사전공고 의무 부과,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사,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은 형태의 소송 인정 등의 논의 존재
- 한편,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5) 향후 추이 등

- 금융위원회의 관심 속에서 상법/자본시장법 분야에서 관련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실무상 자기주식 처분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존재 →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처분할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Lee
& KO

| 2024 기업경영 법정책 리스크 점검 세미나

공정거래

- 플랫폼,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규제

2024. 1. 31.

법무법인(유) 광장 | 변호사 선정호





목 차

- 1 플랫폼에 대한 규제
- 2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규제
- 3 시사점

1. 플랫폼에 대한 규제

1.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가.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제재

1. 네이버 쇼핑 · 동영상 사건

▪ 공정위 제재(2020. 10.) - 사건 내용 및 조치 결과

- ✓ 이종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우대”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차별 취급 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분야	법 위반 행위 내용 및 영향	조치 결과
쇼핑	자사 오픈 마켓 입점 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 변경 →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 오픈 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 증가, 경쟁 오픈 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 감소 → 오픈 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2015년 4.97% → 2018년 21.08%)	시정명령, 과징금(약 265억원)
동영상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 →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 TV 동영상 수는 22% 증가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수 증가율은 43.1%)	시정명령, 과징금(2억원)

※ 출처: 공정위 2020. 10. 6. 보도자료,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 · 동영상 제재”

2.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 문제된 행위 사실 및 영향

- ✓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하였음
- ✓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짐 →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쉽게 증대
- ✓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가맹택시 점유율: 2019년 14.2% → 2021년 73.7%)
- ✓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2019년 92.99% → 2021년 94.46%)

■ 공정위 제재 (2023년 2월) – 적용 법조 및 조치 결과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 ✓ **시정명령**: (1)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 중지, (2)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3)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 ✓ **과징금**: 약 257억원

※ 출처: 공정위 2023. 2. 14. 보도자료,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3.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건

■ 문제된 행위 사실 및 영향

- ✓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 강제
- ✓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음
- ✓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함**(모바일 OS 시장 2010년 38% → 2012년 87.4% → 2014년 93.2% → 2019년 97.7%)
- ✓ 포크 OS를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 혁신 저해**

■ 공정위 제재 (2021년 9월) – 적용 법조 및 조치 결과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 ✓ **시정명령**: (1)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 ✓ **과징금**: 약 2074억원

※ 출처: 공정위 2021. 9. 14. 보도자료,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부과”

4. 구글 앱마켓 사건

■ 문제된 행위 사실 및 영향

- ✓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
- ✓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함** (대형게임사, 중소게임사 포함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
- ✓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운영 불가능하게 됨
- ✓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 **약 30% 증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

■ 공정위 제재 (2023년 4월) – 적용 법조 및 조치 결과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 ✓ **시정명령**: (1)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2)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
- ✓ **과징금**: 약 421억원

※ 출처: 공정위 2023. 4. 11. 보도자료,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1.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나. 독과점 규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1. 입법 동향 개관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23. 1. 12. 시행)
 - ✓ 공정위 예규 제418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위반 여부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목적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23. 11. 16.)
 - ✓ 박주민 의원 등 11인 의원 발의
 -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법은 16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
-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공정위 제정 추진 중)
 - ✓ 2023. 12. 19.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보고 → 입법 추진 계획
 - ✓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예정
- 비교 – EU 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 ✓ EU DMA 2022. 11. 발효되어 2024. 3. 규제 시작을 앞두고 있음

2.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23. 1. 12 시행)

■ 심사지침 제정 배경

-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 심화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통계청: '19 135.3조 → '20 161.1조)
- ✓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 증가
-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음

■ 목적과 적용 범위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함
- ✓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심사지침에 규정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

■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 ✓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정보교환 등 상호 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

2.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23. 1. 12 시행)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주요 특성	관련 사례
교차 네트워크 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정 집단 이용자 수 증가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집단 이용자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침	앱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 증가 → 동일 앱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자의 편익 및 개발자 수 증가 → 다양한 앱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된 소비자의 편익 및 소비자의 수가 다시 증가
규모의 경제	고정비용이 크고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우 적어,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짐	모바일 OS 관련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나 이러한 비용은 이용자 수 증가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효율화될 수 있음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가 생산, 물류, 판촉 등 사업 전 영역에 활용되어,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	검색엔진은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학습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수와 누적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음
명목상 무료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출처: 공정위 2023. 1. 12.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시행”

2.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23. 1. 12 시행)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

유형 및 주요 내용		주요 경쟁제한 효과
멀티호밍 제한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우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
끼워팔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 출처: 공정위 2023. 1. 12.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시행”

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2023. 11. 16. 발의, 박주민 의원 등 11인)

■ 제안 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 관련 용어의 정의

- 1)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
-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3.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2023. 11. 16. 발의, 박주민 의원 등 11인)

항목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신고 (안 제5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자가, (1)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2)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안 제6조)	(1) 공정위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별도 요건, 공정위 고시 제정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 (2) 공정위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안 제8조부터 제14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남용행위를 금지 + 경쟁제한성의 추정 (우려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예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안 제15조, 제16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시장조사 (안 제17조부터 제19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처분 및 동의의결 (안 제20조부터 제26조)		공정위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가능.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

4.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 공정위 추진 배경 (공정위 2023. 12. 19. 보도자료)

- ✓ 2023. 11. 28.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 지시
- ✓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
- ✓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가 늦어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
- ✓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여, EU 및 독일에서는 대응 입법 완료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 ✓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

■ 부당행위 금지

- ✓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 금지
- ✓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
- ✓ 부당행위 발생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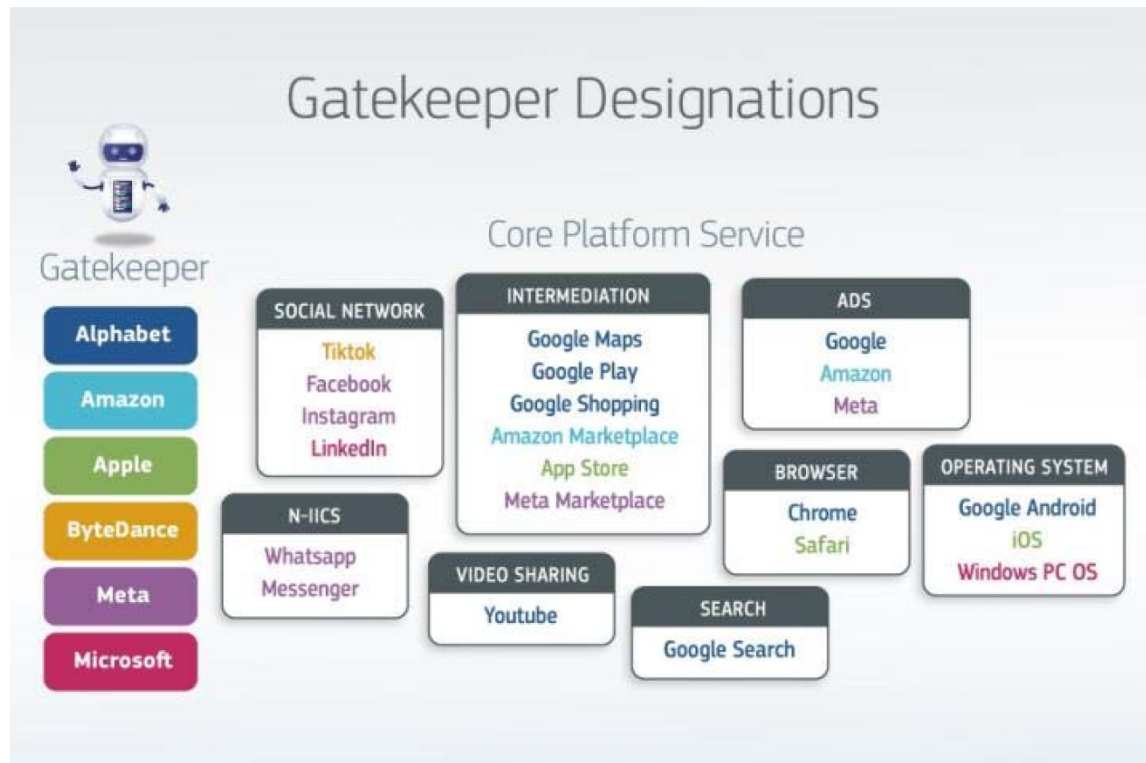
5. 비교 –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es Act, DMA, 2023. 5. 2. 시행)

■ 법안 적용 시기

- ✓ 2022. 11. 1. DMA 발효
- ✓ 2022. 5. 2. 법안 적용
- ✓ 2023. 9. 6. 규제 대상 확정 후 유예기간 약 6개월
- ✓ 2024. 3. 규제 시작

■ 적용 대상: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규제

- ✓ 최근 3년간(각각)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 가치가 750억 유로 이상
- ✓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 월간 활성화 최종 이용자수가 4,500만명을 초과하고, 연간 활성 사업이용자수가 10,000개 이상



※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gatekeepers_en), 2023. 9. 6. 발표

5. 비교 –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es Act, DMA, 2023. 5. 2. 시행)

■ 주요 규제

- ✓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제3자 앱이나 앱스토어 설치 허용)
- ✓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업체 자체 사업 홍보 및 계약 허용
- ✓ 게이트키퍼 자사 상품·품용역 우대행위 금지
- ✓ 앱개발자들에 대하여 게이트키퍼의 앱스토어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제재

- ✓ 과징금: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 최대 20%
- ✓ 정기적 이행강제금: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정기 납부
- ✓ 조직적인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부문 일부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시정조치 가능

1. 플랫폼에 대한 규제

다. 갑을 관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플랫폼 규제 – 갑을관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1. 공정위 제정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 26. 국무회의 통과, 소관위원회 계류 중)

- ✓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각종 폐해도 현실화
- ✓ →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 발표(2020. 6) (경쟁 P2P/ 갑을 P2B/ 소비자 P2C)
- ✓ 공정위는 위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법 적용 대상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 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출처: 공정위 2021. 1. 25.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한 국무회의 통과 "

1. 공정위 제정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1)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
- 2)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 · 중지, 계약 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사전 통보**
- 3) **금지 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
- 4)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조항 마련
- 5) **공정거래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6)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실시
- 7)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8)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
- 9) 동의를결제 도입

※ 출처: 공정위 2023. 1. 12.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시행

2.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2023. 5. 11.)

-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2022. 8. 출범)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 ✓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협치)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 발표

구분	기관명
플랫폼업계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구글, 메타, 당근마켓, 강남언니, 로톡, 한국신용데이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점업계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민간전문가	권헌영 교수(고려대), 이성엽 교수(고려대)
정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등

※ 출처: 공정위 2023. 5. 11. 보도자료,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2.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발표 내용

구분	발표 내용	세부 내용
갑을	열린장터(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소비자/이용자	열린장터(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사기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 의무 및 이행점검 등 실효성 확보방안 규정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신뢰구축, 안정성 제고 등 주요 원칙과 기업별 사례

※ 출처: 공정위 2023. 5. 11. 보도자료,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

2. 지주회사 관련 규제 (CVC 포함)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개념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1) 자산총액 기준: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단, 벤처지주회사는 3백억원 이상일 것)

2) 지주 비율 기준 (주된 사업 기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것

※ 벤처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1) 자회사: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계열회사

2) 손자회사: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계열회사

3) 증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 지주회사의 유형

1) 일반 지주회사(공정거래법) vs 금융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2) 순수 지주회사 vs 사업 지주회사

3) 최상위 지주회사 vs 중간 지주회사

4) 법상 지주회사 vs 사실상 지주회사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일정한 기한 내 그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

- 1) 설립/전환/합병등기의 경우: **등기일**(해당일부터 법상 지주회사)로부터 **30일** 이내
- 2)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전환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그 익일부터 법상 지주회사)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전환 신고 가능: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과 자회사 주식가액 소명 필요

■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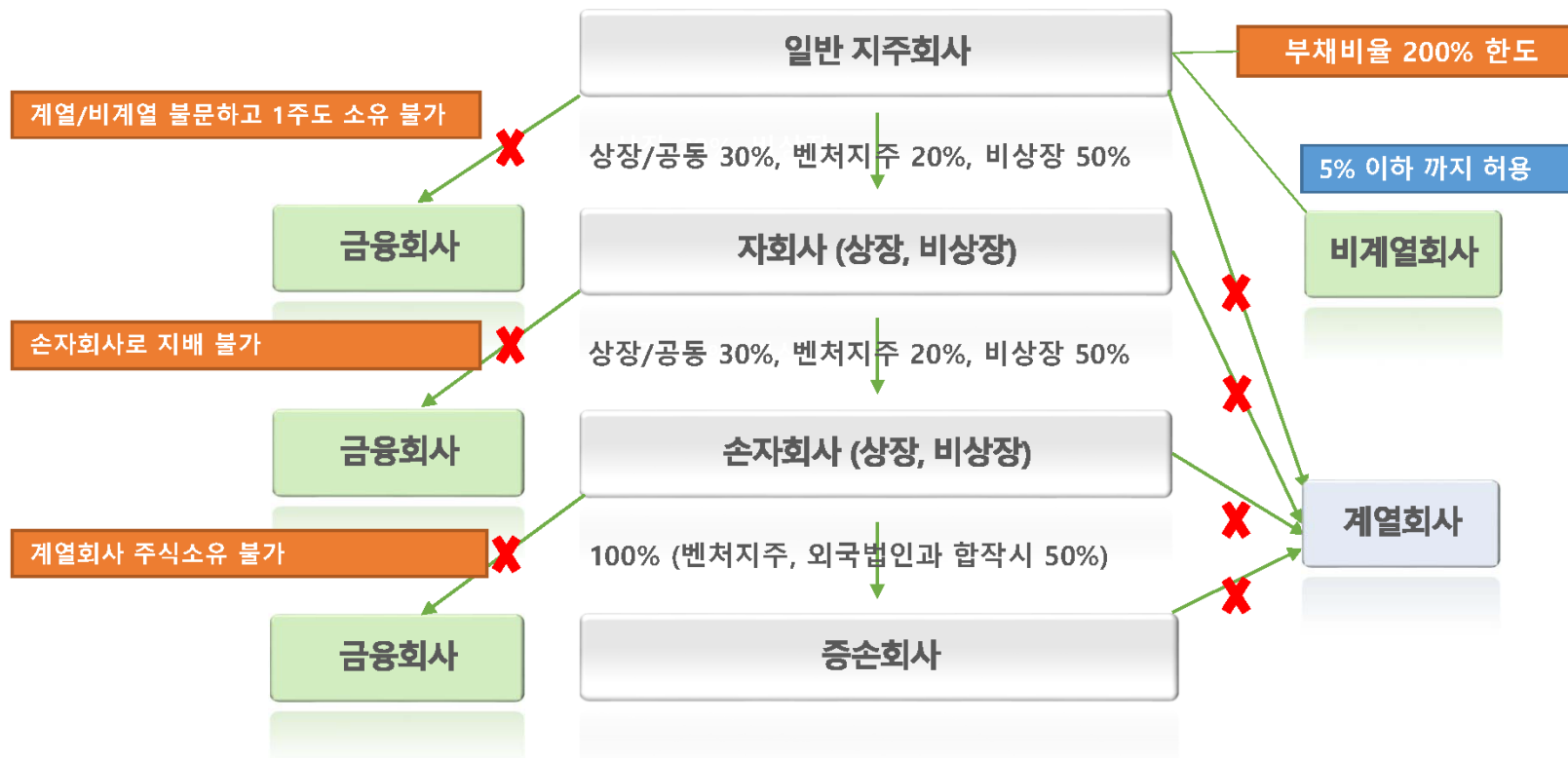
지주/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

소유주식 감소,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

- 1) 사유발생일 현재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제출 (설립·전환 신고와 달리 신고기한 없음)
- 2) 공정위는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용제외 여부를 통지
- 3) 지주회사 적용제외 시점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기업의 신고 또는 공정위 회신 시점과 무관)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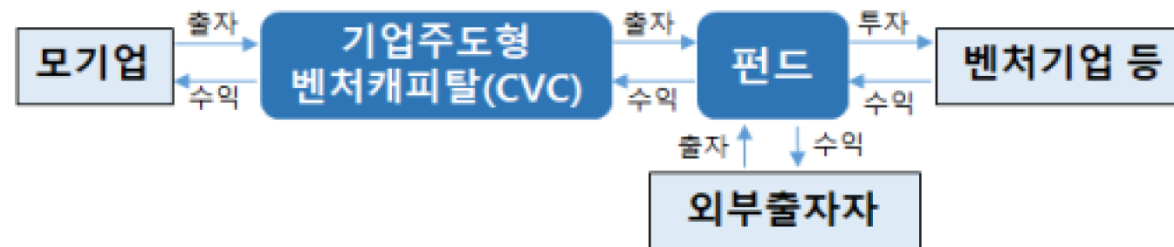


- 출자단계별 지분을 제한 및 금산분리 원칙(금융/비금융 간 칸막이 설치)가 규제의 핵심
- 설·립전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 2년 (공정위 승인을 얻어 2년 연장 가능)
- 설·립전환 이후 일시적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1년 (연장 불가)
- 행위제한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위반금액의 20% 한도),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2021. 12. 30. 시행)

■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 ✓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 벤처캐피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이 있음
- ✓ **공정거래법상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의미
- ✓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제한적 소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 ✓ 일반지주회사는 CVC는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음 (중간지주회사는 보유 불가능;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제13조)

2. CVC 관련 행위제한 규정

항목	내용
차입 규모 제한	CVC는 차입 규모를 자본총액의 200% 내로 유지하여야 함
업무 범위 제한	“투자” 행위만 허용 (융자 등 타금융업 금지)
외부 출자 제한	펀드 조성시 (1)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출자 외의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로 제한, (2)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 금지, (3) 총수일가 출자 금지
투자 금지 대상	CVC 또는 C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 (2) CVC의 계열회사 , (3) 총수일가가 출자한 기업 에 대한 투자 금지
해외 투자 제한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로 제한(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
매각 금지	총수일가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지분 매각 금지
모니터링	(1) 일반지주회사는 CVC 주식 소·유취득 시 그 사실을 4개월 내 공정위에 보고, (2) CVC는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CVC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장치 마련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지주회사 미보유 기업집단의 VC 또는 지주회사 체제 밖 VC에는 적용되지 않음

2. CVC 관련 행위제한 규정

■ CVC 활성화 관련

- ✓ 공정위는 CVC 활성화 건의에 대해, 최근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 2024. 1. 2.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 2023. 11. 23. 공정위 사무처장 벤처기업협회 방문

의안번호 / 발의연월일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24958 / 2023. 9. 27.	권칠승 의원	✓ [외부 출자 제한] <u>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u> 이 아닌 <u>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u> 을 기준으로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 하도록 개정 (CVC 자율성 향상 및 원활한 투자 목적)
25110 / 2023. 10. 16.	윤창현 의원	✓ [외부 출자 제한] CVC가 투자조합 결성 시 CVC 및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비중. <u>현행 개별 투자조합별 40%에서 50%</u> 로 상향 ✓ [해외 투자 제한] CVC 총자산 중 해외기업에 투자된 금액의 비중. <u>현행 20%에서 30%</u> 로 상향

3. 시사점

규제 관련 시사점

■ 플랫폼 규제 관련

- ✓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방해 또는 독점력 유지·확대 목적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 증대
- ✓ 실제로 공정위의 플랫폼에 대한 제재 사례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
- ✓ 공정위의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의원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 있으나,
- ✓ 플랫폼 독점화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상황
- ✓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대비 필요

■ 지주회사 및 CVC 규제 관련

-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둔 것
- ✓ CVC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기업은 성장동력을, 벤처업계는 지속적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CVC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 상향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

감사합니다

Lee
& KO

| 2024 기업경영 법·정책 리스크 점검 세미나

노동·산업안전 분야

2024. 1. 30.

법무법인(유) 광장 | 변호사 송현석





목 차

① 입법 동향

② 최신 판례

1. 입법 동향

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경과

1. 개요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 1.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 1. 27.)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제1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동법은 2024. 1. 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됨

2. 경과

- 2023. 9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2024. 1.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25일 본회의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강의 일자까지의 상황 확인 필요)

2)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경과

1. 개요

-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 범주에 포함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 ' 에서 '근로조건'까지 확장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정** :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함
-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

2. 경과

- 2023. 11. 9. 국회 본회의 통과, 12. 1.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자동 폐기
- 전망

3) 기타 논의 중인 법률안

기타 논의 중인 법률안

- 채용절차법

- 1) 고용세습, 채용강요 등에 대한 제재 강화(과태료 → 형사처벌)
- 2) 채용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신설

- 노동조합법

- 1)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
- 2)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 노조 차별 등 노조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금지

-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 1)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신설
- 2)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2. 최신 판례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일정할 수는 없다(기존 판례 폐기).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과 근로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는 단순히 요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중요한 유효요건이다.
3. 단체협약은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임에도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행해진 인사처분을 무효라고 보았고, 다만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권 남용 법리를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6.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 +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

2) 형사처벌과 관련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 형사처벌 부과와 관련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초과 여부, 즉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가산임금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형사처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기준 준별

3)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1.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 파기, 환송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경영책임자 실행 확정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1.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유족들의 선처 탄원, 사고 이후의 시정 조치 등
 - 불리한 정상: 입법 취지 및 산재 예방의 필요성, 동종 전과 등

감사합니다

Lee
& KO

| 2024 기업경영 법 · 정책 리스크 점검 세미나

[공급망 관리 분야]
EU 공급망 실사법 및
국내 공급망 실사 규제 논의

2023. 1. 30.

법무법인(유) 광장 | 변호사 김상민





목 차

- 1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
- 2 국내 공급망 실사법 동향
- 3 국내외 공급망 실사법 대응 현황
- 4 시사점

1.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1/10)

가. 개요

- (입법 배경) 자율규제(UN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GPs/OECD 기업실사 지침 등)의 한계(EU 생산 및 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관찰)
→ 경성규범화
- (적용범위) 중소기업(SMEs)을 배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기업과 역외기업에 적용.
 - EU 역내기업의 경우 순매출(고위험군업종의 경우 매출이 낮아도 대상이 됨)과 근로자수,
 - EU 역외기업의 경우 EU 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실사대상) 해당 기업, 그 자회사 및 협력사(비즈니스 파트너)
 - (집행위원회안 및 의회안)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에 있는 기업
 - (이사회안)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 상의 business partner ← 업스트림 & 일부 다운스트림(유통, 재활용 등) 포함
- (실사의무) 인권과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의 식별 → 예방·완화·제거 → 고충처리절차 운영, 모니터링 및 보고
- (실효성 확보 수단)
 - 감독당국은 조사 및 점검 권한을 가지고, 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단 등을 명하거나,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음.
 -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경감할 의무 또는 현실적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2/10)

나. 입법 경과

- 2022. 2. 23. EU 집행위원회안 발의
- 2022. 12. 1. EU 이사회안 채택
- 2023. 6. 1. EU 의회 수정안 발표
- 2023. 12. 14. EU 의회와 이사회 잠정 합의 도출 발표
 - 우측 보도자료 외에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문안에 대한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 필요 (2024년 상반기 예상)
 -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잠정 합의 내용은 표시

* 관련 링크: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2/14/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council-and-parliament-strike-deal-to-protect-environment-and-human-rights/>



Council of the EU

PRESS EN

PRESS RELEASE
1028/23
14/12/2023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deal to protect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today reached a provisional deal on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which aim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n the EU and globally. The due diligence directive will set obligations for large companies regarding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respect to their own operations, those of their subsidiaries, and those carried out by their business partners.

Obligations for companies

The due diligence directive lays down rules on obligations for large companies regarding actual and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for their business chain of activities which covers the upstream business partners of the company and partially the downstream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r recycling.

The directive also lays down rules on penalties and civil liability for infringing those obligations; it requires companies to adopt a plan ensuring that their business model and strategy are compatible with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Main elements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al agreement reached today between the two co-legislators frames the scope of the directive, clarifies the liabilities for non-compliant companies, better defines the different penalties, and completes the list of rights and prohibitions that companies should respect.

Scope of the directive

The agreement fixes the scope of the directive on large companies that have more than 500 employees and a net worldwide turnover over €150 million. For non-EU companies it will apply if they have over €150 million net turnover generated in the EU thre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e directive. The Commission will have to publish a list of non-EU companies tha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directive.

Financial Sector

According to the deal reached today, financial services will be temporari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directive, but there will be a review clause for a possible future inclusion of the financial downstream sector based on a sufficient impact assessment.

Climate change and civil liability

The compromise struck today strengthen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obligation of means for large companies to adopt and put into effect, through best efforts, a transition pla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On civil liability, the agreement reinforces the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affected. It establishes a period of five years to bring claims by those concerned by adverse impacts (including trade unions 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t also limits the disclosure of evidence, injunctive measures, and cost of the proceedings for claimants.

As a last resort, companies that identify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or human rights by some of their business partners will have to end those business relationships when these impacts cannot be prevented or ended.

Penalties

For companies that fail to pay fines imposed on them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 directive, the provisional agreement includes

several injunction measures,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turnover of the company to impose pecuniary penalties (i.e. a minimum maximum of 5% of the company's net turnover). The deal includes the obligation for companies to carry out meaningful engagement including a dialogue and consultation with affected stakeholders, as one of the measures of the due diligence process.

Public procurement

The deal establishes that compliance with the CSDDD could be qualified as a criterion for the award of public contracts and concessions.

Definitions

The provisional agreement clarifies the obligations for companies described in Annex I, a list of specific rights and prohibitions which constitutes an adverse human rights impact when they are abused or violated. The list makes references to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have been ratified by all member states and that set sufficiently clear standards that can be observed by companies.

The compromise adds new elements to the obligations and instruments listed in the Annex as regards human rights, particularly for vulnerable groups. Cor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Conventions can also be added to the list, by delegated acts, once they have been ratified by all member states.

The provisional agreement also introduces in the annex references to other UN conven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ikewise, the compromise clarifies the nature of environmental impacts covered by this directive as any measurable environmental degradation, such as harmful soil change, water or air pollution, harmful emissions or excessive water consumption or other impacts on natural resources.

Next steps

The provisional agreement reached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now needs to be endorsed and formally adopted by both institutions.

Background

On 23 February 2022, the Commission submitt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a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The Council adopted its general approach on 1 December 2022.

Press office -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Rue de la Loi 175 - B-1048 BRUSSELS - Tel.: +32 (0)2 281 6319
press@consilium.europa.eu - www.consilium.europa.eu/press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3/10)

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집행위원회안 및 이사회안)

■ 적용대상

구분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해당 조건 동시충족시 적용)	
EU 기업	Group 1	✓ 평균 5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약 2,200억원) 초과
	Group 2	✓ 평균 250명 초과 ~ 500명 이하 근로자 고용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580억원) 초과	✓ 순매출액 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EU 역외기업	Group 1	✓ 근로자수 기준 없음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Group 2	✓ 근로자수 기준 없음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 적용시기

구분		지침 발효 후 적용 시기
집행위원회안	Group 1	2년 후
	Group 2	4년 후
이사회안	Very Large Companies*	3년 후
	Group 1	4년 후
	Group 2	5년 후

* Very Large Companies

- 전세계 순매출액 3억 유로 초과 & 근로자수 1,000명 초과 EU 기업
- EU역내 순매출 3억 유로 초과 EU 역외기업

- 금융기관의 경우 잠정적으로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충분한 영향 평가를 거쳐 추후 추가 가능
- EU 집행위원회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EU 역외기업의 목록 게시 의무 부과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4/10)

다.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의회안)

※ 의회안

구분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해당 조건 동시충족시 적용)		지침 발효 후 적용 시기
EU 기업	Group 1	✓ 평균 1,0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최종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또는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ultimate parent company)	3년 후
		✓ 평균 5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최종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 평균 25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평균 전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4년 후
	Group 2	✓ 평균 25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최종 회계연도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1.5유로 이하		5년 후 (유예 사유 제시 필요)
EU 역외 기업	Group 1	✓ 최종 회계연도 전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또는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의 최종 모회사	3년 후
		✓ 최종 회계연도 전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최종 회계연도 전년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Group 2	✓ 해당 기업 자체는 Group 1에 해당하지 않으나, ✓ 해당 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평균 5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최종 회계연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최종 회계연도 전년 기준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5/10)

라. 실사 의무 개관

1

공급망 실사 내재화

- ✓ 실사의무를 기업 정책 및 Risk 관리체계에 통합

2

부정적 영향 평가

- ✓ 인권 · 환경 관련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3

부정적 영향 관리

- ✓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예방, 완화조치 수립 및 이행

4

부정적 영향의 제거

- ✓ 실제적 부정적 영향 발견시 심각성과 기업활동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부정적 영향 제거

5

고충처리 절차

- ✓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절차 확립

6

모니터링 및 평가

- ✓ 자사, 자회사, 협력사의 공급망 실사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수행

7

실사이행 공개

- ✓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

8

기후변화 대응

-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채택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6/10)

마. 실사 의무의 구체적 내용 (1/4)

■ 실사 의무의 내재화, 인권·환경에의 부정적 영향 파악

의무 사항	내용
실사 의무의 내재화 (integration) (제5조)	✓ 실사 의무를 기업 정책(corporate policy)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할 것 ✓ 실사 정책(due diligence policy)을 마련하고 이를 최소 24개월마다 업데이트할 것 ✓ 실사 정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기업의 실사 방안에 대한 설명 (b)자사 직원, 자회사, 직접/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c)실사 이행 절차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 파악 (제6조)	✓ Group 1: 기업, 그 자회사 및 활동사슬과 관련된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에 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파악 ✓ Group 2: (실사 의무를 완화하여) 해당 고위험산업 관련 부정적 영향에 한해 파악 ✓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 ⇒ 부속서 I(Annex I) 2장(Part II) ✓ 인권에 관한 부정적 영향 • 부속서 I 1장 1절에 열거된 인권 중 하나를 침해하여 부속서 I 1장 2절에 열거된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인권 침해로 부속서 I 1장 2절에 열거된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회원국이나 제3국 또는 그 당국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에 의해 인권이 남용될 수 있는 성질일 것, - 인권 남용이 부속서 I 1장 2절에 열거된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일 것, - 기업의 사업 운영 및 활동사슬의 성격과 범위, 사업 부문의 특성, 지리적 및 운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그러한 인권 침해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을 것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 명확화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7/10)

마. 실사 의무의 구체적 내용 (2/4)

의무 사항	내용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제7조)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예방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이해관계자(개인, 시민사회단체, 공급망 내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 등)와 협의 ✓ 필요한 투자 실시(관리, 생산공정,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 비재정적 투자 포함) ✓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상의 보증(contractual assurances) 요구 - 간접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적 연쇄(contractual cascading)를 통한 보증 요구 ✓ 계약상 보증에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한 검증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검증: 산업별 이니셔티브* 또는 독립적 제3자 검증(independent third-party verification)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인 비즈니스 파트너에 계약상 보증 요청 시 검증 비용 부담 의무 ✓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공(자금 조달, 저금리 대출, 보증, 경영시스템 교육 등)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나 기존 비즈니스 관계 연장을 지양해야 함. (a)단기간에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 (b)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경우: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 ✓ 금융기관의 경우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 중단/종료 의무 예외 인정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8/10)

마. 실사 의무의 구체적 내용 (3/4)

의무 사항	내용
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해소, 최소화 (제8조)	✓ 실제적 부정적 영향 발견시: 심각성과 기업활동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부정적 영향을 해소 ✓ 부정적 영향의 즉시 종료가 불가능할 경우: 적시에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제7조에서 정한 조치의 수행: 필요한 투자 실시, 계약상 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공 및 검증 비용 부담 ✓ 실제적 부정적 영향을 해소 또는 최소화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맺거나 기존 비즈니스 관계 연장하는 것 지양 (a) 해소 또는 최소화가 이루어져 부정적 영향이 금방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 영향과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 (b)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경우 해당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사업 관계를 종료
고충처리 절차 (complaints procedure) (제9조)	✓ 고충처리 절차를 확립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 피해자 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 (b)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 대표 (c) 시민사회단체 ✓ 제기된 고충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업이 실사를 통하여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충사항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는 적절한 후속조치 요청 및 기업 대표자와 면담 요구 가능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9/10)

마. 실사 의무의 구체적 내용 (4/4)

의무 사항	내용
모니터링 (제10조)	✓ 인권 및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파악 · 예방 · 제거와 관련하여 기업, 그 자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의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 최소 24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실사 정책을 업데이트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개 (제11조)	✓ 기업은 최소 12개월마다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 ※ 집행위는 향후 보고의 내용 및 보고 기준에 관한 내용을 위임법령(delegated act)을 통해 별도로 정할 예정
기후변화 대응 (제15조)	✓ Group 1 기업에 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과 전략이 포함된 사업 계획(business plan)의 수립 및 채택 • 기후변화가 기업운영에 미치는 위험 또는 영향 수준 포함 • 기후변화가 기업운영의 주요 위험 또는 영향으로 파악될 경우, 사업 계획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의 채택, 실행을 위한 의무 조항 강화
역외기업의 공식 대표자 지정 (제16조)	✓ 적용대상인 EU 역외기업은 1개 회원국 내에 대표자(authorised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함. ✓ 감독관청은 지침의 이행 준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 대표자와 연락 ✓ EU 역외기업은 대표자의 정보를 감독기구에 통보

1) EU 공급망 실사 지침 (10/10)

바. 위반시 제재 수단

제재 유형	내용
제재 (penalties) (제20조)	✓ 중지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 •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 비례적이고, 억제력을 가져야 함. • 제재 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잠재적, 현실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금전적 제재 부과시 부과 금액은 위반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액에 비례해야 함. → 기업 순매출액의 최소 최대 5% ✓ 제재와 관련한 감독관청의 결정은 공표되어야 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civil liability) (제22조)	✓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종료/최소화 조치 의무(제7조, 제8조)를 고의, 과실로 해태한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기업의 활동사슬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일으킨 손해가 온전히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해 발생된 것일 경우 해당 기업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피해를 전보(full compensation)하며, 중복 및 징벌적 배상으로 인한 초과 배상에 이르러서는 안됨. ✓ 기업이 그 자회사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 이해관계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포함 • 제소기간은 5년으로 제한 • 증거 공개, 임시 조치, 소송비용 부담 등 제한	

2) 개별 국가별 동향

법안		주요 내용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 2023. 1. 1. 시행 ✓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은 2023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 ✓ 제품 공급망에 대해 실사·보고 의무화, ✓ 위반시 최대 연간 매출액 2% 벌금, 공공조달에서 제외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의무법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 2022년도부터 시행 ✓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 실사 항목이 공급망 내 아동노동 활용 금지 및 예방으로 한정됨 ✓ 위반시 행정 벌금 혹은 형사처벌 부과(5년 내 벌금 2회 부과시, 기업 책임이사 2년 이하 징역)
 프랑스	기업경계법 (Duty of Vigilance of Parent and Ordering Companies)	✓ 2017년도부터 시행 ✓ 프랑스 내 고용인원 5,000명 이상 또는 전세계 고용인원 10,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 ✓ 공급망 내 인권 현황 모니터링, 인권침해 방지 방법 공개 ✓ 위반시 민사상 책임 부과
 영국	현대노예법 (공급망에서의 투명성 법률) (Modern Slavery Act –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 2015년도부터 시행 ✓ 총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 ✓ 노예제,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방지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항 포함 ✓ 위반시 개인에게 최대 종신형, 기업에게 벌금
 노르웨이	투명성 법률 (Transparency Act)	✓ 2022년도부터 시행 ✓ 국내외 총매출 7000만 크로네 (약 95억원) 총자산 3500만 크로네 (약 48억원), 고용인원 정규직 5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 ✓ 불이행시 행정 처분 및 벌금 부과

3) 해외 분쟁 사례

선제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

■ 프랑스

- 2017년도 법 시행 이래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 혐의 관련 총 15건의 소송 사례 중 현재 아래 4건에 관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짐.
 - 토탈 우간다 사건(석유 기업인 토탈의 원유 시추 및 운송 사업 관련 강압적 토지취득 절차, 생물다양성 침해)
 - EDF 멕시코 사건(에너지기업 EDF의 멕시코 내 발전 사업 관련 토지 취득 절차의 불공정성 등)
 - 수에즈 칠레 사건(수자원 기업 Suez의 칠레 식수원 사업 관련 원유 유출 및 식수 제공 의무 위반)
 - 토탈 기후 관련 사건(토탈의 기후변화 대응 미비)
- 위 사건들은 모두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공급망 실사법 이행 여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 유사 쟁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

■ 독일

- 독일에서는 관할당국인 BAFA에 최근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됨.
 - 톰 테일러, 아마존, 아이케아 사건(사업장 안전 점검 불이행 등 안전 환경,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 침해)
 -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사건(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
- BAFA는 위 3사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따라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및/또는 과태료 처분에 나아가야 함.

2. 국내 공급망 실사법 동향

1)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1/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3. 9. 1.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입법목적)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 지원,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 침해 예방
→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존중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범위)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의무를 제외하고 적용배제) 및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 ✓ 중소기업: 상시 5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2,000억원 미만
- (실사대상) 자신의 기업활동(외부감사법에 따른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실상 지배회사의 기업활동 포함)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
 - ✓ 공급망: 기업이 재화(금융투자상품 포함) 또는 용역 생산 시 거래를 할 때 당해 기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외 주체 및 그 기업이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
 - ✓ 직접공급자(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와 간접공급자(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접 공급자 이외의 상대방) 포함
- (실효성 확보 수단)
 - ✓ 기업은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 (피해자가 기업활동/공급망 내 기업활동이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 기업의 법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 ✓ 법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2/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 주의의무: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인권환경실사 결과의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
-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고의·과실로 감독책임을 게을리 하여,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시 **연대책임** 부담

■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

- ✓ 권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심의 및 직권조사**, 분쟁·고위험 지역의 지정,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지원,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 (분쟁해결 절차)

- ✓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 기업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위원회 조사 등)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의 확정

1)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3/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실사 의무)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 대책의 수립·실행 → 대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 고충처리절차 운영 → 인권환경실사 보고서

의무 사항	내용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	✓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의 수립 및 이행책임자의 지정 ✓ 인권환경실사 실시 계획 및 결과, 인권환경위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이미 운영중인 경우 불필요) ✓ 고충처리기구의 설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제7조, 제8조)	✓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인권환경실사 결과의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
고충처리절차의 운영 (제9조)	✓ 현존,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 수립·운영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제10조)	✓ 현존,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의 최소 연 1회 확인 ✓ 다음의 경우 현존,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을 지체 없이 확인 (a) 기업활동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b) 기업활동이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c) 기업이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 인권환경위험의 심각성과 발생 개연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

1)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4/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실사 의무)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 대책의 수립·실행 → 대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 고충처리절차 운영 → 인권환경실사 보고서

의무 사항	내용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수립·실행 (제11조)	✓ 식별한 현존, 잠재하는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에서 식별한 경우 아래의 사항 포함 (i) 인권환경위험의 완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일시 중단 또는 변경, (ii) 재발방지, (iii)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제공 ✓ 자신의 공급망 내의 직접 공급자 활동에서 식별한 경우 (i) 해당 공급자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ii) 인권환경위험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요청하고, (iii) 이에도 불구하고, 인권환경위험이 계속된 경우, 자신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도급 등의 관계 종료 ✓ 자신의 공급망 내의 간접 공급자의 활동에서 식별한 경우, 가용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위 직접공급자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상위공급자가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함 ✓ 필요시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중요사항을 내부 규정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평가 및 환류 (제12조)	✓ 인권환경위험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 실시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제13조)	✓ 인권환경위험의 식별 결과(제10조), 대책의 수립 및 실행 결과(제11조), 대책의 평가 결과(제12조)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아래의 경우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a) 이해관계자가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b)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자신의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 (c) 위에 준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기업

1)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5/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의 비교 분석

구분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국내 공급망 실사법안
적용범위	✓ 고위험군업종의 경우 별도의 매출 기준 적용 ✓ EU 역외기업에도 적용	✓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기준 적용 ✓ 상법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회사에만 적용
실사기준	✓ 인권, 환경 관련 국제협약 등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i)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ii)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iii) 국제환경협약 및 이를 이행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 그 밖에 기후 위기와 같이 인권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포괄규정)
실사이행 체계	✓ 역외기업의 경우 공식 대표자 지정 ✓ 이사의 책임 (집행위, 이사회, 의회안에 따라 다름)	✓ 기업 내 실사 이행책임자 지정 ✓ “경영책임자”의 실사이행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의무 및 감독책임 부담
중소기업의 검증 비용 부담	✓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보증을 받는 경우 독립적 제3자 검증비용 부담	✓ 공급망 내 공급자에 대한 인권환경위험 관련 계약시 비용 부담 조항 부재
기후대응	✓ 기후관련 사업계획서 수립 및 채택 의무	✓ 기후관련 대응 의무 조항 부재하나 실사기준 중 포괄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손해배상 관련 인과관계의 추정	✓ 손해배상책임 관련 인과관계 추정 조항 부재	✓ 피해자가 기업 자신의 기업활동/공급망 내 기업활동이 손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 추정
위반시 제재	✓ 형사처벌 부과 조항은 없음 ✓ 금전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	✓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 가능 ✓ 매출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국내 ESG 경영촉진법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2023. 9. 1.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입법목적) 기업의 사회 환경 성과까지 측정하는 ESG 경영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최초의 ESG 경영촉진법을 제정
→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정부는 **ESG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함
 -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 ✓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ESG 경영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 정부는 **ESG 경영공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 ✓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ESG 경영공시를 평가 후 공개할 수 있음
 - ✓ 정부는 자발적 공시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
 - ✓ 정부는 공급망체계 내 ESG 관련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음
 - ✓ 정부는 ESG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확산동향 등 필요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가능
 - ✓ 정부는 필요시 관련 기관을 **ESG경영촉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센터, 검증기관, 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ESG 경영 관련 **위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3) 소결: 기업 대응 방안 수립의 필요성

- (1) 국가별로 공급망실사의 실사 주체, 실사 범위, 의무내용, 제재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특정하고, 적용 대상 법률을 아우르는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2) 실사 의무 불이행시, 민형사책임이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 등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됨.
- (3) 전국가적으로 공급망 실사의무가 확대되는 추세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무대상자가 아닌 기업이라도 기본적인 실사 체계를 갖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국내외 공급망 실사법 대응 현황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전략 (1/2)

- EU 기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법 제정 이전부터 가치사슬 내 인권·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급망 실사를 실시
- ※ [사례 1] Vattenfall
 - 2016년 독일 인권·환경단체 Urgewald은 Vattenfall이 1996~ 2006년간 일반인 3,100명 이상을 학살한 반군 단체의 주요 자금원인 콜롬비아 북부 광산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다, 독일 지역 발전소는 아직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갈탄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
 - 이에 Vattenfall은 2017년 11월 **콜롬비아 석탄 공급망에 대한 첫번째 인권위험 평가를 실시**해 해당 석탄 채굴이 다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폭력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 및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화해 절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중단**
 -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제고하고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업체 모범규준(Code of Conduct for Suppliers)**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급업체의** 인권, 노동권, 환경, 비즈니스 윤리 관련 **위험과 영향을 평가**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전략 (2/2)

※ [사례 2] Nestlé

- 네슬레는 2010년부터 자사의 정책·절차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해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 이를 통해 네슬레는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를 중심으로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권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파트너십 하에 덴마크 인권연구소는 네슬레의 가치사슬 일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2013년 네슬레 영업국에서 실시한 7가지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과 결과 발표
 - 2014년 해당 보고서에 대해 20여명의 국제기구, NGO, 싱크 탱크, 컨설팅펌의 인권 전문가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하며,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급망 실사 이행 방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 2018년 네슬레는 공급망 내 노동권 문제에 주목해 제3자 전문가인 덴마크인권연구소, 환경 컨설팅사 Forest Trust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슬라 팜유 공급망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도출
- 201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2019년 4월에는 업계 최초로 자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해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

2) 국내 (1/7)

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영향 (1/2)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외 기업에 직접 적용될 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바 **약 18,000여개의 對EU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외에도 일정 요건 이상(고위험군 산업군, EU역내 순매출액)을 충족하는 **EU 역외 기업**도 적용되는데다, 적용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력 보유
 - 對EU 수출 국내 기업은 약 18,000여개社(대기업 527社, 중견기업 1,181社, 중소기업 16,206社)로 2022년 기준 對EU 수출 금액은 681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선박, 차량 부품 등으로 파악
 - 對EU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 기업의 공급망 내 포함된 국내 기업** 역시 EU 공급망 실사법의 간접적 영향력 하에 포함
 - 무역보험공사는 자사 수출 보험을 이용하는 對EU 수출 국내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 **고위험 산업군인 기업 수를 110여개社**로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발효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적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

2) 국내 (2/7)

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영향 (2/2)

- 현재 국내 기업 상당수가 공급망 내 ESG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및 내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대비·대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
 - (2021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국내 대·중·소기업 193개사를 대상) 이미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내 ESG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중**
 - (2022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621개사 대상) **5곳 중 1곳**은 이미 대기업 및 해외 거래처로부터 **ESG 평가 실시를 요구 받은 상황**
 - (2022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2.2%)이 공급망 내 ESG 경영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을 우려
 - (2023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국내기업 300개사 대상)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을 2023년 ESG 현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
 - **'EU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단기적인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가 '별다른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37.3%에 이릅니다

나. 정부 대응 현황과 전략 (1/2)

- 2022년 12월 정부는 공급망 실사에 국한하지 않고 ESG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들의 ESG 대응력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여 ESG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핵심전략 하에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 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선도'의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 특히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관련 세부 과제로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 액션플랜을 제시
 - ESG 공급망 실사 모의평가·컨설팅 등 지원, ESG 경영수준진단,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공, 자본조달과 해외수출시 기관 투자자 및 산업 얼라이언스 등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모범사례 발굴·확산, 'ESG 수출 가이드북' 발간 등
-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진단 항목을 개발

나. 정부 대응 현황과 전략 (2/2)

- 2023년 5월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시급한 현안 과제로 파악하고 환경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 실사 지원만을 목표로 한 **‘공급망 대응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
 - ①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컨설팅 강화
 - 수출기업(500개社) 대상 현장실사 등을 포함한 실사 쏠단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수준진단 고도화 및 · 중기 CEO 대상 ESG 경영 교육 등 ESG 인식 확산 등
 - ②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마련
 - 실사 대상인 협력업체가 경영정보 등을 입력시 원청기업 열람 가능한 ‘실사대응 플랫폼’ 마련
 - 진단·컨설팅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지속 활용 및 산업별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제공을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 ③ 실사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자금 여건 개선
 - ESG 경영 우수기업에 금리·한도 우대(5대 은행) 및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12개 은행) 지속 및 공급망 실사 진단 결과 우수기업도 우대 대상에 추가 검토
 - 인력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사어로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종합지원단’ 운영 검토 등
 - ④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 대기업과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MOU’를 체결하여 협력업체 대상 온실가스 저감 등 컨설팅 지원 등

다. 기업 대응 현황과 전략 (1/3)

- **[ESG 평가]** 현재 국내 대기업은 EU 공급망 실사법안 입법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확대·강화**하며 공급망 실사에 대비
 - 최근 3년간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7개社(56.7%), 2020년 20개社(66.7%)에서 2021년 26개社(**86.7%**)로 점증
 - 2019~2021년 3개년 연속 ESG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 증가
 - ESG 평가 항목 수도 최소 30문항에서 120문항 이상까지 환경, 안정, 인권,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부문을 망라
 - 한편 2021년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수행 중인 대기업 26개社 중 18개社(**69.2%**)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 정책에 반영**
 - 구매정책 반영 18개社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社, 페널티를 부과한 곳은 16개社,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社,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社로 조사
- **[사례]** 현대엔지니어링의 협력사 ESG 평가

다. 기업 대응 현황과 전략 (2/3)

- **[협력회사 행동규범]** 국내 대기업들은 본격적인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에 앞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회사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
 - 대체로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RBA Code of Conduct, 세계인권기준, 유엔글로벌캠포트(UNG)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등의 항목으로 구성
 - ※ 인권노동: 근로시간 준수, 강제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아동노동 금지, 임금 및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결사의 자유, 윤리적 채용
 - ※ 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비상사태 대비, 사고 관리, 안전진단, 보건·위생 관리, 보건 안전 교육
 - ※ 환경: 유해물질,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대기배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관리, 환경 법률 및 규제 준수
 - ※ 기업윤리: 투명경영 및 반부패, 공정 거래·광고·경쟁, 개인정보 보호, 내부 고발자 보호, 지적재산 보호, 분쟁광물 금지
 - ※ 경영시스템: 기업의 준수 의지,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리스트 점검, 교육 및 소통, 정보 관리, 고충처리제도 운영, 구제수단 마련, 하위협력사 관리
 - 협력사가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주)SK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내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행력 제고
 - 대기업이 협력사로 하여금 협력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존재
- **[사례]** SK 텔레콤의 협력사 ESG 행동규범

다. 기업 대응 현황과 전략 (3/3)

- **[교육 프로그램 등 직접 지원]**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 및 행동규범 준수 요구 외에도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안전 체계 구축 직접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성과 개선에 노력
 - 협력사 ESG 평가 및 행동규범 준수 결과 등을 기반으로 ESG 리스크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협력사에게 관련 교육,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ESG 성과가 뛰어난 협력사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역량 제고 프로그램, 위험 감소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선정한 협력사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예시)

현대제철	현대건설
• 공급사 에너지 사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진행, 에너지 절감 설비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 • 2021년 총 10개 협력사 대상 3억 원 지원, 연간 9,5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 2022년 총 6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4억 원을 지원해 연간 약 7,9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7개 협력사 22억 원 상당의 에너지 절감 설비·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협력사는 연간 약 6 원의 전력비용 절감	• 100억 원 미만 건설 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안전 취약할 수 있기에 협력사가 안전전담 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임금지원제도 운영 • 안전·품질 수행평가에서 우수업체 선정 시 2022년 연간 1조 원 규모의 전략 구매를 통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2022년 독립된 제3자 기관을 통해 협력사 SH평가 진행, 평가 결과 '미흡'인 총 117개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 이 중 58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컨설팅 비용 약 2억여원 지원

- **[사례]** 삼성전자의 협력사 ESG 교육 지원

4. 시사점

- 1 실사 "주체"뿐만 아니라, 실사 "객체"인 중소기업들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2 EU 공급망 실사 지침 외, 국내법안 및 각국의 법률 현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함
- 3 공급망 실사 체계를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업무 매뉴얼/프로세스를 개발, 정비해야 함
- 4 고위험산업군은 채굴, 생산, 제조 단계를 포함한 전 공급망 이슈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5 협력사는 실사주체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Lee
&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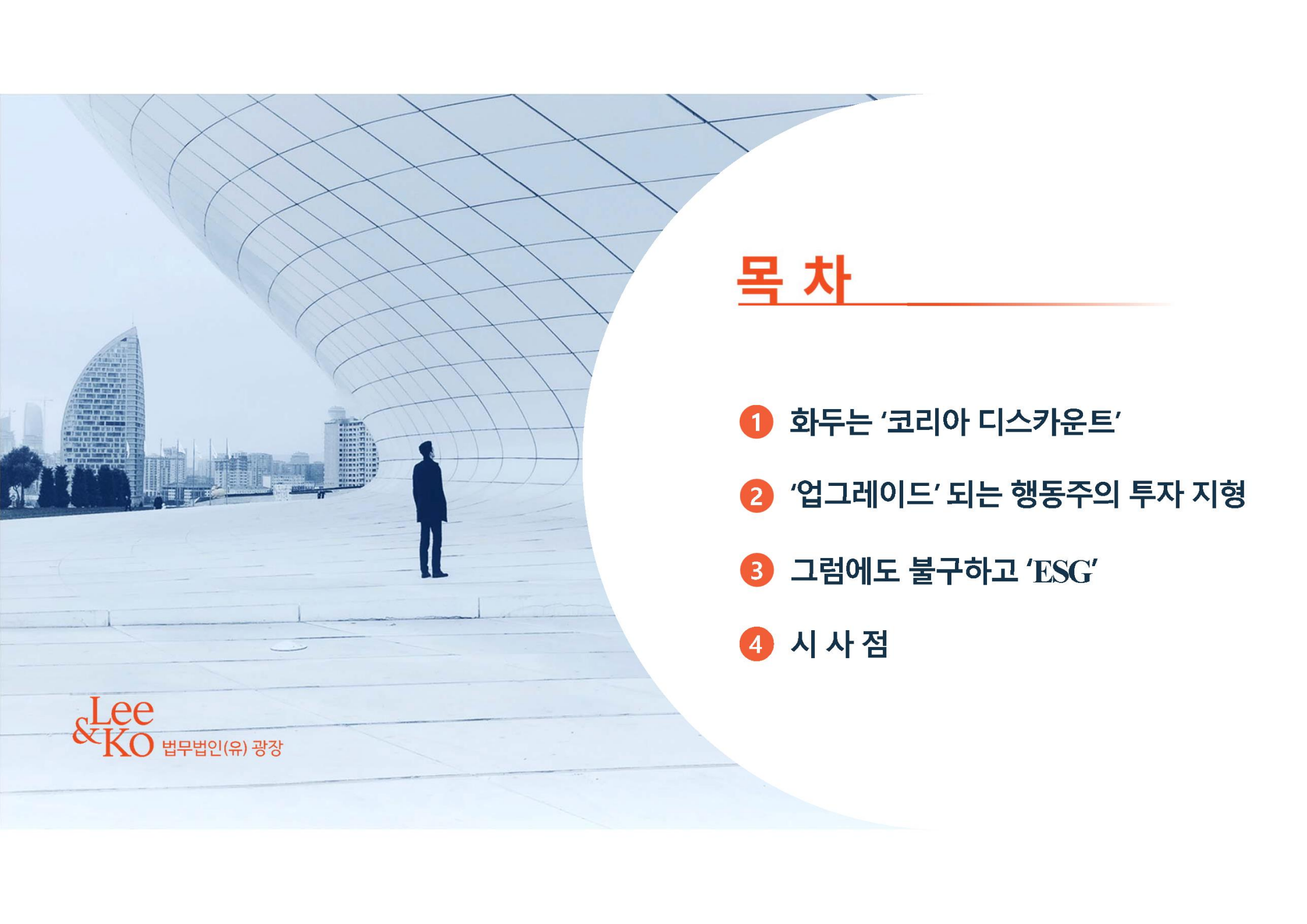
| 주주권 행사 분야

2024 기업경영 법·정책 리스크 점검 세미나

2024.1.30

법무법인(유) 광장 | 연구위원 김수연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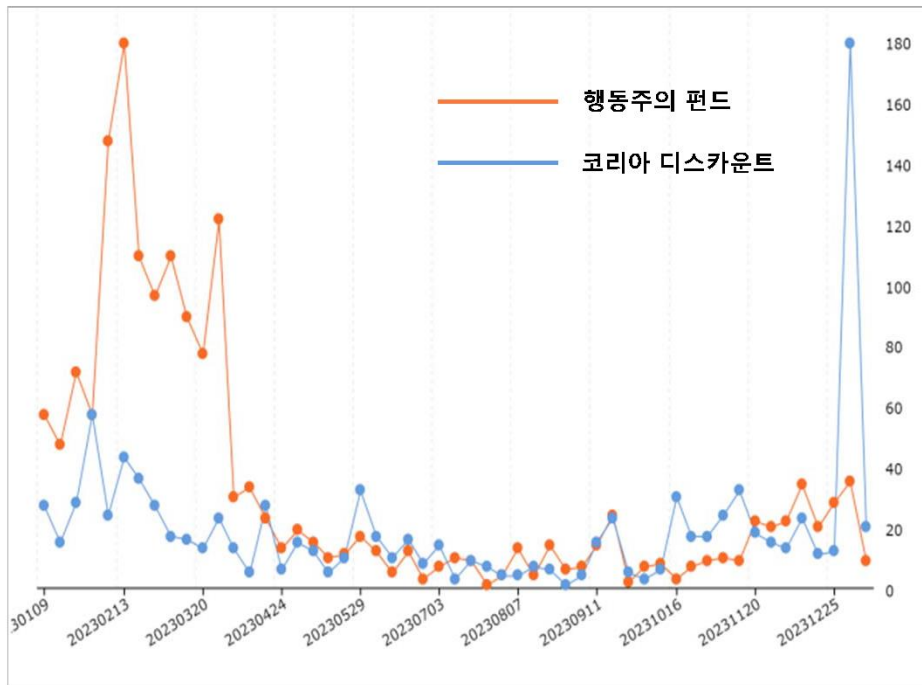
- ①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 ②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 ④ 시 사 점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 키워드로 보는 주주권 행사 (1) -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드라이브

■ 뉴스 키워드 검색



자료: Bigkinds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천명

보도자료

담당

경제금융비서관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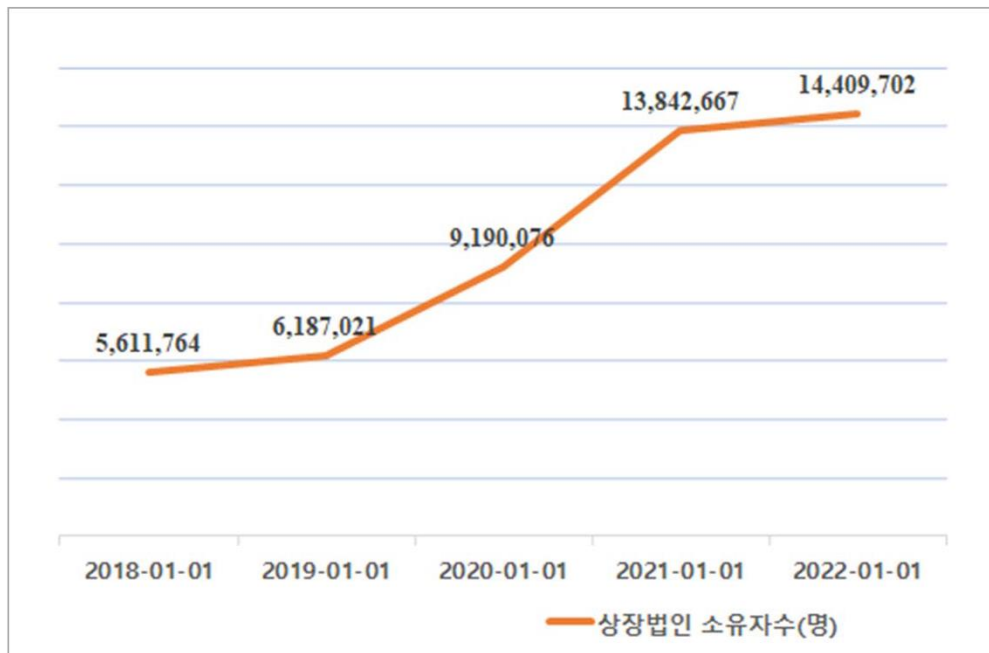
※ 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4년 1월 2일(화)

윤석열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대통령,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1400만 개인투자자 마음 잡기

■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자료: 예탁결제원

이재명·윤석열 "코스피 5000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제"

이데일리

거래소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개최
李·尹 "투명성·공정성 확보, 불공정거래 엄단해야"
"양도소득세 완화·공매도 차별 개선·K-유니콘 상장 ↑"

등록 2022-01-03 오후 2:34:54
수정 2022-01-03 오후 3:32:57
이은정 기자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자본시장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투명성·공정성·성장성 확보를 실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3000 시대에 도달했지만, 4000을 넘어 5000을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업 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 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투명성 해소, 낮은 회계처리 신뢰도 제고,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동반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의 선봉장, 행동주의 펀드

강성부 KCGI 대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쓴다. 회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하는 나라다. 상속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전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소각 의무화가 힘들다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전체 주식시장의 주식 총수가 감소했다. 20% 이상 줄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버는 이익의 40%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버는 것이다. 나머지 40%는 주가가 올라서 버는 것이다. 마지막 20%는 배당으로 번다. 우리나라는 자사주 소각만 해도 코스피 4000포인트 바로 간다고 확신한다."

'23.11.20. 아시아경제 인터뷰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

"주식회사는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익과 손해가 'n분의 1'이 돼야 한다. 주주 평등 원칙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개 회사의 주인은 '오너'라고 생각한다. 실재론 모든 주주가 주인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다. 너무 높다.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어느 오너가 주가를 올리려 들까. 배당소득세율도 50%에 달한다. 배당하면 배당금 절반을 세금으로 반납한다. 배당 성향을 높일 이유가 없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다.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도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 행동주의 펀드 활동도 그 일환이다."

'23.4.17. 신동아 인터뷰



Letter to investors

South Korea – enough is enough

Jonathan Pines
Lead Portfolio Manager

Asia ex-Japan Equity

Federated Hermes Limited

www.hermes-investment.com
For professional investors only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해묵은 논의들

2019년 美 헤지펀드 달튼 투자회사가 韓 정부·의회에 보낸 공개 서신 일부 내용

Hedge Fund Sends Letter to Korea
Lawmakers on Stock Value Boost
Bloomberg
Dalton Investments asks Korean authorities to revamp rules

▶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① 대주주 배당소득세율 인하

- 현행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5억 초과시 45%)로 인해 배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익 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부의 이전 유발(홍콩 배당소득세율 0%, 미국은 보통주 60일 보유시 최대 23.8%)

②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 현재 최대주주 상속세율(최고세율 65%)이 너무 높아 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시키려고 하며, 이는 편법승계를 유발

▶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소각

- 자사주 매수 시 소각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자동 소각은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주주환원 혜택을 제공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은 매우 보편적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제 의무화

- 2018년 이사회 안건 부결비율이 0.4%로 지배주주 견제 필요

▶ 은행 금융지주사의 낮은 주주환원을 개선토록 규제 완화

- 국내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이 적정함에도 감독당국 규제에 의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매우 저평가
- 평균 주주환원율이 25%로 해외 기업의 1/3 수준
- 주주환원이 제한되어 잔여 자본으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인수합병을 지속 추진하게 되는 경향 발생

▶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 도입

- 의무 공개매수 제안 제도는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수주주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제도
- 인수합병시 매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또는 아예 매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지배주주 지분 매수가격과 잔여 지분 매수가격차가 2~4배)
- 유럽 및 아시아 국가 다수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일본의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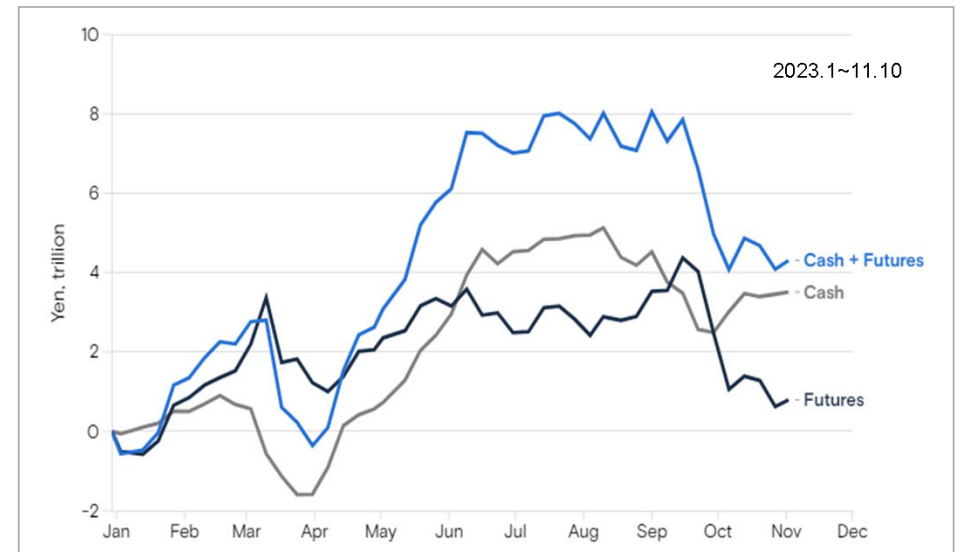
■ Nikkei 225 Index



출처: CNBC

■ 日 증권시장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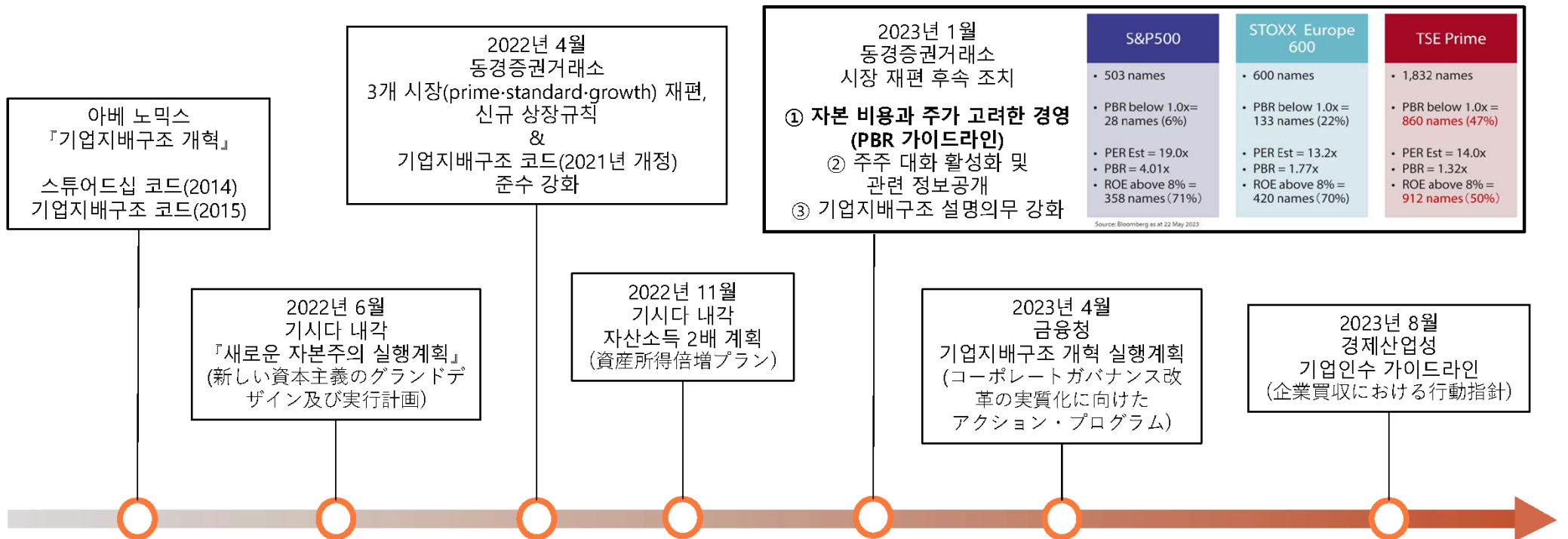
▶ 2023년 4월~6월 10주 연속 외국인 투자 현금·선물 매입액 530억 달러



출처: Goldman Sachs, 동경증권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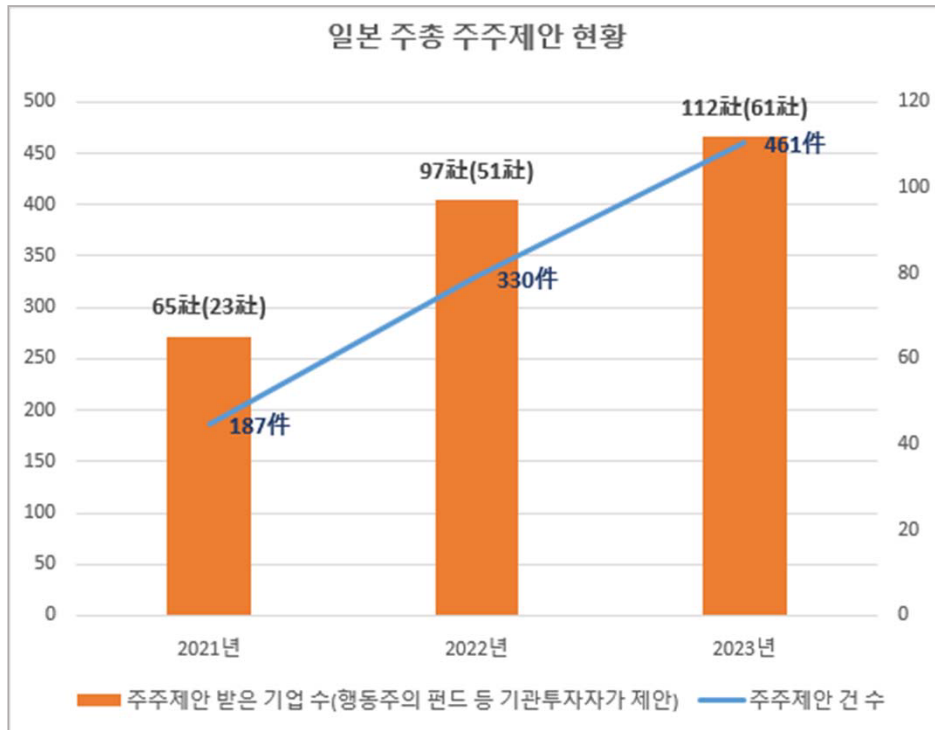
일본의 변화 (2)

■ 주주행동주의 친화적으로 변모하는 日 규제 환경



일본의 변화 (3)

■ 강력해지는 日 주주행동주의의 파고



자료: 大和總研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REUTER 기사(2023.5.1일)

- A group of investors led by prominent activist shareholder Yoshiaki Murakami said a push by the Tokyo bourse for better capital efficiency will strengthen their crusade to reduce Japan's unusually high number of chronically undervalued stocks.

▶ NIKKEI Asia 기사(2023.5.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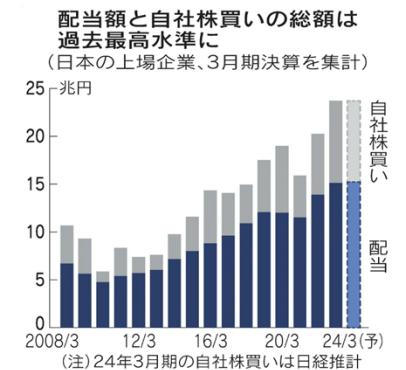
-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ushed for a shift from savings to investments many times in the past and never succeeded. For it to succeed, Kishida needs to show people that it does pa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the best tool to be used to put pressure on corporates.”

▶ 日本經濟新聞 기사(2023.6.8일)

- 2024년 3월 결산 회계연도 예상 배당액은 총 15.2억 엔으로 3년 연속 증가 예상

▶ Bloomberg 기사(2024.1.10일)

- 행동주의 펀드 타겟이 된 일본 기업의 총 시장 가치가 2022년 1170억 달러 → 2023년 2520억 달러 2배 이상 증가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 키워드로 보는 주주권 행사 (2) -

행동주의 펀드 활력, 여전히 상승세

■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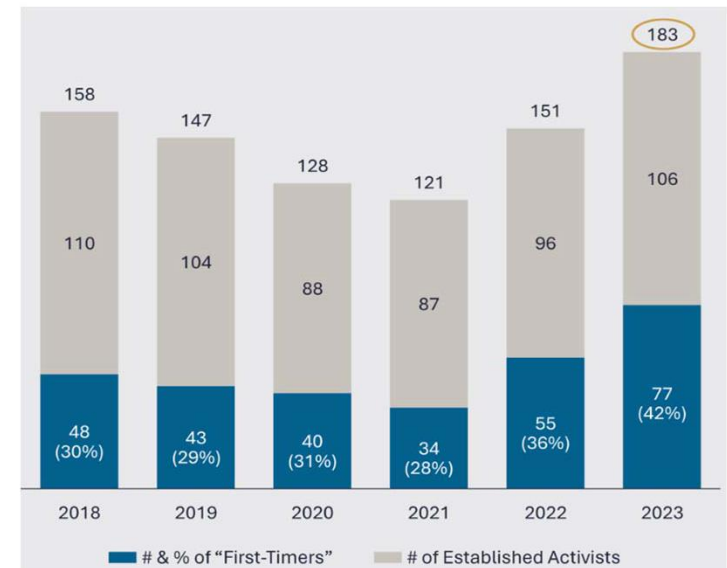
- ▶ 2022년 235건 → 2023년 252건, 전년 대비 7%p 증가
- ▶ 유럽 69건-APAC 44건, 지난 5개년('18~'22) 평균 캠페인 건수 대비 각각 26%p, 55%p 증가



출처: Lazard/FactSet(액티비스트 펀드 캠페인 발표 당시 시총 5억 달러 이상 타겟 기업 대상 집계)

■ 글로벌 액티비스트 펀드 현황

- ▶ 2022년 151개 → 2023년 183개, 전년 대비 21%p 증가
- ▶ 2023년 신생 액티비스트는 77개로 전체 활동 펀드 중 42% 차지,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신생 펀드가 31개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출처: Lazard/FactSet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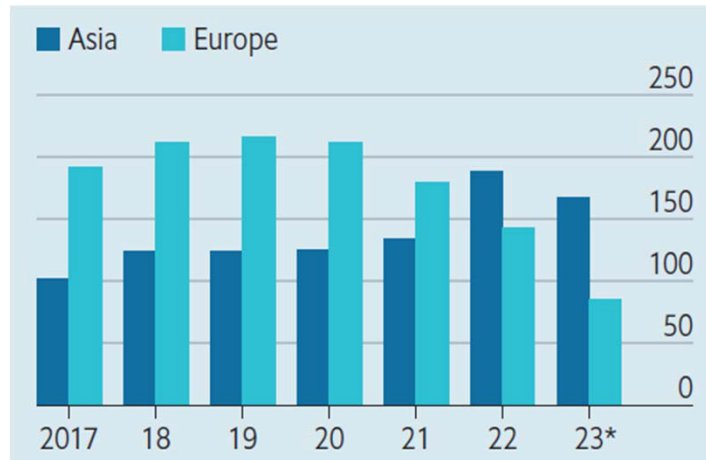
액티비스트 공격받는 국내 기업 수 급증

■ 액티비스트 타겟 아시아기업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Full Year	102	124	124	125	134	188	
H1 YTD	55	96	88	88	94	145	167

출처: Insightia

The Economist, ‘Shareholder shake-up’ (2023.9.2)



■ 국가별 액티비스트 타겟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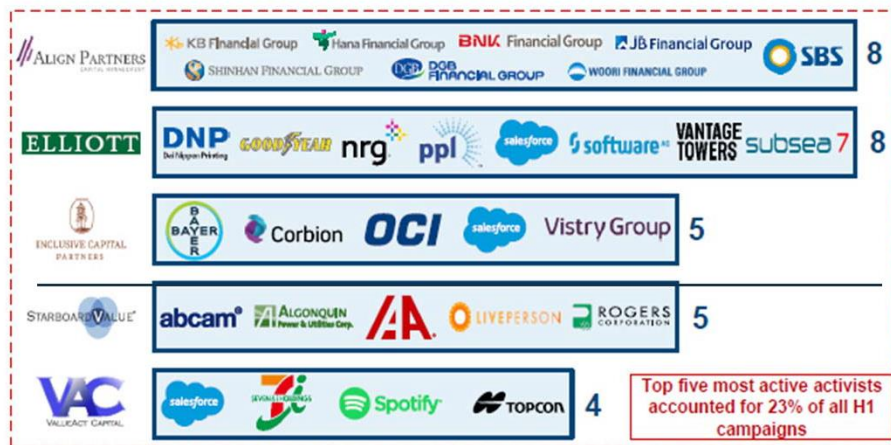
	Full Year			H1 YTD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3
미국	501	462	510	393	362	406	403
일본	67	66	108	55	51	89	89
한국	10	27	49	5	18	41	60
영국	41	47	43	21	25	28	25
독일	60	44	33	46	37	26	16
싱가포르	13	12	8	7	8	3	7
프랑스	12	12	10	7	7	7	7
중국	8	9	2	2	8	0	4
이탈리아	4	7	2	2	4	2	2
인도	5	4	4	3	1	2	1
대만	3	1	1	3	1	0	1

출처: Insightia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행동주의 펀드에게 한국 시장은 블루오션?

2023년 상반기 가장 활발했던 5대 액티비스트 펀드



출처: Barclayz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액티비스트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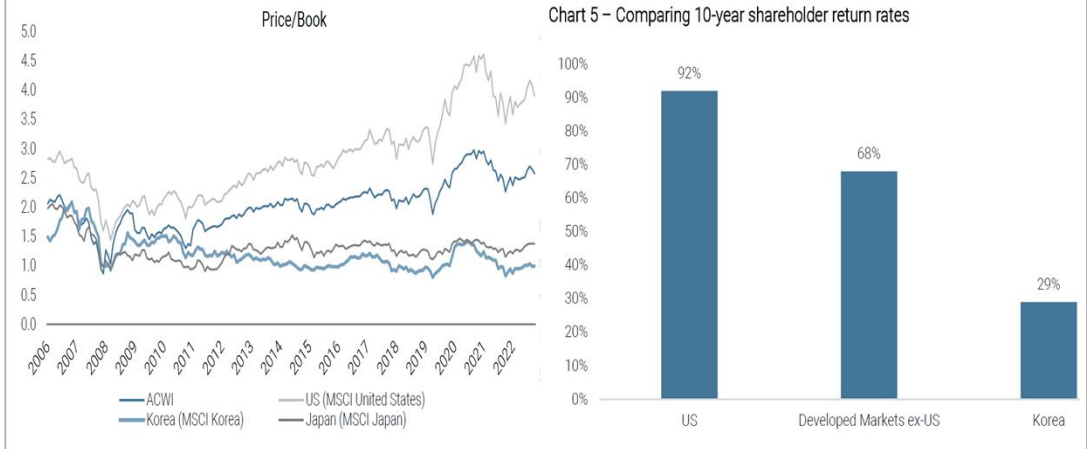
제프리스 "아시아 증시, 숨겨진 가치는 현금...투자 기회 노려야"

한국경제

신정은 | 입력 2023. 11. 24. 12:24 | 수정 2023. 11. 24. 12:33

DaltonInvestments

Korea – The Next Great Asian Value 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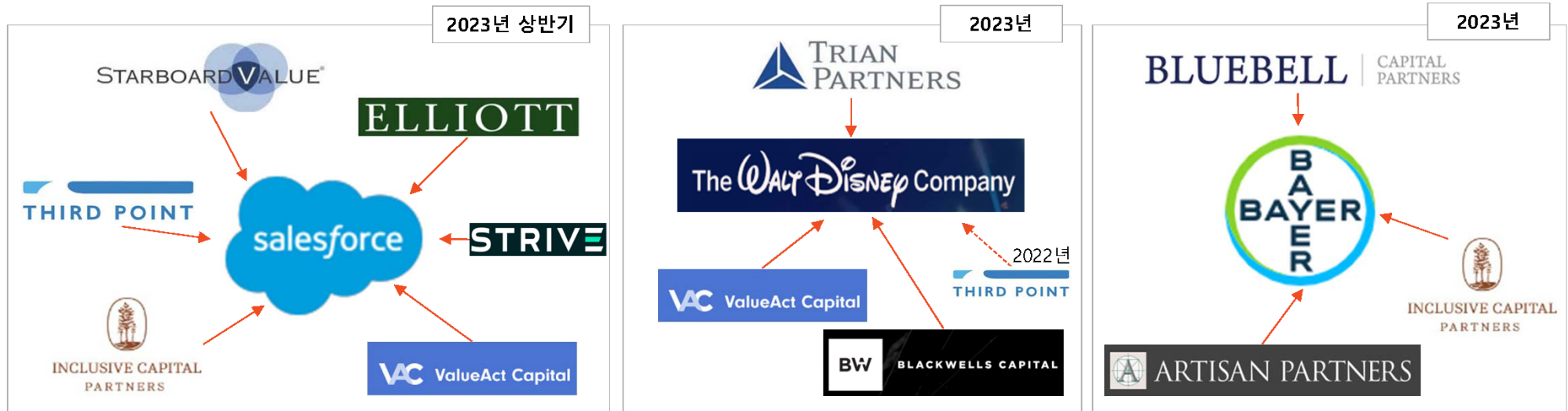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 (1)

■ 액티비스트 떼 현상 (swarming phenomenon)

- ▶ 비슷한 시기에 복수의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동일한 하나의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독자적인 전략과 기대수익 목표를 가지고 행동주의 투자 활동을 하는 것
- ▶ 최근 나타난 떼(swarming, 스워밍) 현상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Wolf Pack과는 구분
- ▶ Lazard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액티비스트 캠페인의 36%(25건)에서 떼(swarming, 스워밍) 현상이 발견, 한편 미국에서 2021년 9건에서 2022년 17건으로 약 2배 증가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 (2)

■ 국내 Collaborative / Collective Engagement (협력적 주주관여) 관련 논의

주요국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Australia	Brazil	Canada	Italy	India	Japan	Kore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evelop and disclose policy on how they discharge stewardship/ownership responsibilities	●	●	●	●	●	●	●	●	●
Develop and disclose policy on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	●	●	●	●	●	●	●	●
Monitor investee companies	●	●	●	●	●	●	●	●	●
Establish guidelines on when and how they should escalate stewardship activities	●	●	●	●	●	○	●	●	●
Act collectively with other investors where appropriate	●	●	●	●	●	●	○	●	●
Develop policy on voting and disclosure	●	●	●	●	●	●	●	●	●
Report periodically on stewardship and voting activities	●	●	●	●	●	●	●	●	●

출처: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 25,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tewardship(2022)



- 자본시장법상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Collaborative Engagement 를 진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자칫 공동보유자로 오인 될 우려 → 대량보유 공시 등 적용

<공동 보유자>

- ✓ 공동보유자는 의결권(의결권 행사 지시를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
- ✓ 이때 합의는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 합의가 있으면 충분
- ✓ 기관투자자간 협의, 경영진 면담 등의 과정에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합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직간접 대화, 발언 등이 있을 경우 의결권 공동행사에 해당될 가능성
- ✓ 포럼 등의 개최 목적이 의결권 공동행사와 관련되거나, 회원 외 참석이 금지되고 내용이 비공개되는 등 포럼이 폐쇄성을 갖는 경우 의결권 공동행사 행위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
- ✓ 특정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할 것을 합의하고, 자체적 판단없이 자문기관 권고대로 의결권 행사 등 구체적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
- ✓ 의결권 공동행사로 공동보유자로 간주되더라도 1000주 미만 혹은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공개매수, 5% 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 (2)

■ 주요국의 Collaborative / Collective Engagement (협력적 주주관여) 활성화 대책



▶ 2009 FSA 『Open letter to the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협력적 관여활동 장애 요인으로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관여행위가 공동보유자로 간주되어 Disclosure of substantial shareholdings(3%), Change in control, Market abuse 관련 공시나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 우려 → FSA는 기관투자자 협회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

- 의결권의 공동행사를 통해 타깃 기업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보유자로 간주하고, 특정 이슈와 관련해 기관투자자간 일회성 논의 내지 공감대 형성된 경우 공동보유에 미포함
-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의 의도를 알고 거래하거나 주식보유에 따른 공시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타깃 기업에 대한 협력적 주주관여행위는 허용
- 투자자가 집단적으로 행동해(acting in concert)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F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역시 기관투자자들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타깃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성 논의 내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미적용



▶ 2014 금융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 관련 의견(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策定を踏まえた法的論点に係る考え方の整理)』

- 의결권 행사에 대한 토론은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지만, 합의한 경우 공동보유자에 해당, 한편 의결권, 주주제안권, 의사록·장부열람권, 임원 등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 청구권 등과 같은 법령상의 권리행사 외에 주주로서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공동보유자에 미해당
- 이때 합의는 단순한 의견교환과는 달리 상호 또는 일방의 행동을 약정(문서·구두, 명시적·묵시적 불문)하는 것을 의미
- 다른 투자자와의 대화 등에 있어서 각각의 의결권 행사 예정을 전달하고 그것이 우연히 일치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공동보유자 미해당

▶ 2023 금융청 『기업지배구조 개혁 실행계획 -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동보유자 범위' 명확화 추진



▶ 2023 BaFin 『Collaborative engagement and the attribution of voting rights: When can things get tricky?』 Statement

- 기관투자자가 Engagement Platform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의결권 행사에 미포함, 하지만 여러 기관투자자가 타깃 기업에 공개서신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단계적 압박을 위해 향후 의결권 행사 계획을 논의할 경우 (결정은 개별 투자자가 각각 내린다 하더라도) 공동의결권 행사 해당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 (3)

■ 행동주의 펀드, PEF 그리고 하이브리드

Activist Fund

- 타깃 기업 5% 내외 소규모 지분 소유
-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비공개 또는 공개로 파악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관련 변화·개선을 요구(이벤트 드리븐)
- 타깃 기업이 관련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 등을 활용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며 이사 선임 등 주총 영향력 행사(적대적)
- 행동주의 펀드 투자 전략은 공격성 정도에 따라 그린메일러(Greenmailers, 칼 아이칸), 우호적 관여(Friendly Engagement, 세비안, 벨류액트), 공격적 협상(Aggressive Negotiations, 엘리엇, 스타보드 벨류) 등으로 구분

- 2013년 Jones Group은 지분 2.3%를 보유한 Barington Capital 압박으로 PE firm Sycamore Partners에게 12억 달러에 매매
- 2018년 엘리엇 자회사 Evergreen Coast Capital(2015년 설립)이 PE firm Veritas Capital 과 함께 57억 달러에 Athenahealth를 매입
- 2018년 PE firm Waterton Global Resource Management가 Hudbay Minerals(12% 보유)에 이사 교체를 요구하며 행동주의 전략 사용
- 2019년 엘리엇과 PE firm Apollo Global Management이 함께 Arconic에 대한 150억 달러 바이 아웃을 추진하다 실패
- 2020년 KKR은 Dave & Buster's Entertainment 지분 10.7% 매수, 행동주의를 암시하며 KKR 측 이사 1인을 이사회에 투입
- 2022년 엘리엇 자회사 Evergreen Coast Capital은 PE firm Vista Equity Partners과 함께 Citrix를 165억 달러에 인수

Private Equity Fund

- 타깃 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업 가치를 개선, 이후 매각 또는 IPO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해당 딜을 진행함에 있어 타깃 기업과 우호적이 것이 특징(바이 아웃)
- 대체로 LP와의 계약에서 타깃 기업 이사회가 반대하는 적대적인 거래 내지 proxy fight 등이 제한되며, 상장 기업에 대한 소규모 지분투자도 총 펀드 자금 중 적은 비율로 허용되는 것이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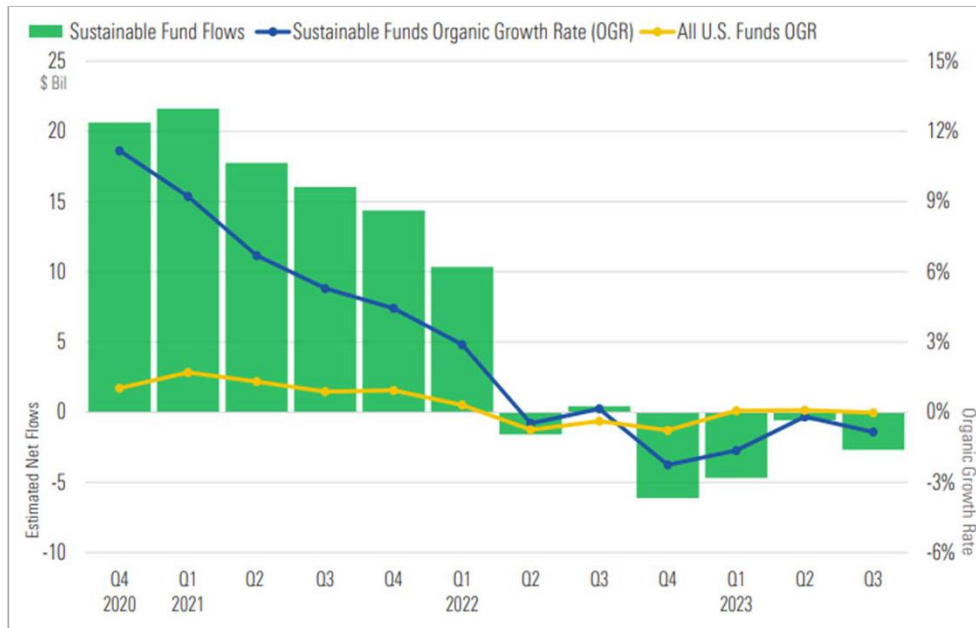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 키워드로 보는 주주권 행사 (3) -

Let's throw ESG in the trash

■ 미국 지속가능 펀드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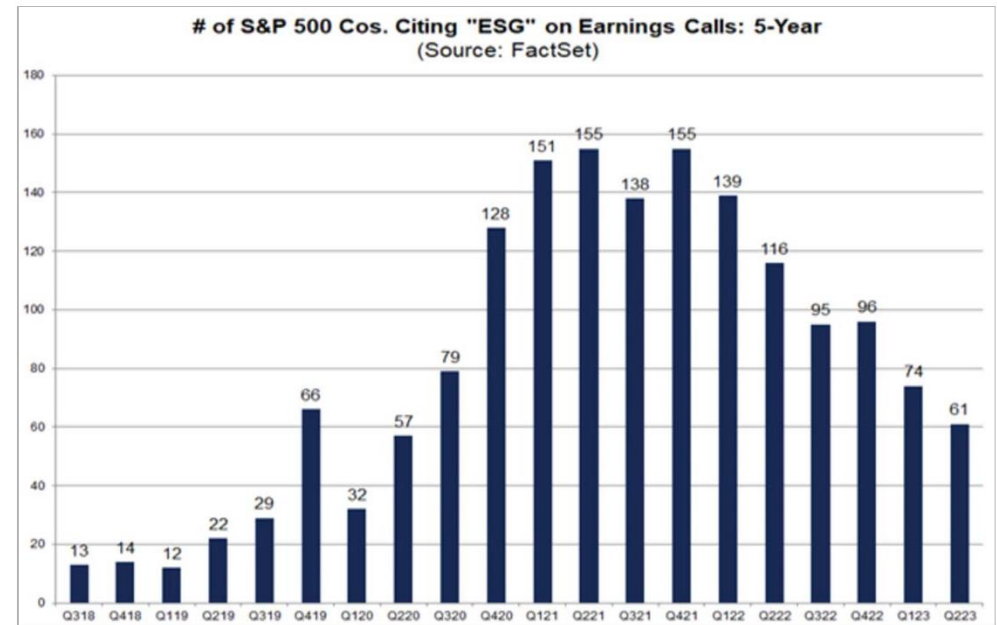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연속 순유출, 약 142억 달러
-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인상, 그린워싱 우려, 정치적 반발 등 복합적 이유 거론



출처: Morningstar

■ 어닝콜에서 ESG 언급한 S&P 500 기업 수

- 2023년 3분기 어닝콜에서 ESG 언급 기업은 61社로 2020년 2분기 57社 수준으로 후퇴
- 2021년 이후 ESG를 언급하는 S&P 기업 수 급감 중



출처: FactSet

ESG 앞에 겸손해진 (?) 행동주의 펀드,

■ ESG 행동주의 대표 펀드 동향

Finance REUTERS®

Activist investor Ubben shutting down Inclusive Capital-sources

By Svea Herbst-Bayliss
November 30, 2023 1:50 PM GMT+9 · Updated 2 months ago



Jeffrey Ubben, Founder & CEO at ValueAct Capital, speaks on the Reuters Newsmaker event "The Future of Shareholder Activism" in Manhattan, New York, U.S., February 22, 2017. REUTERS/Andrew Kelly/File Photo [Acquire Licensing Rights](#)

FINANCIAL TIMES

Exxon nemesis Engine No. 1 drops activism in hunt for new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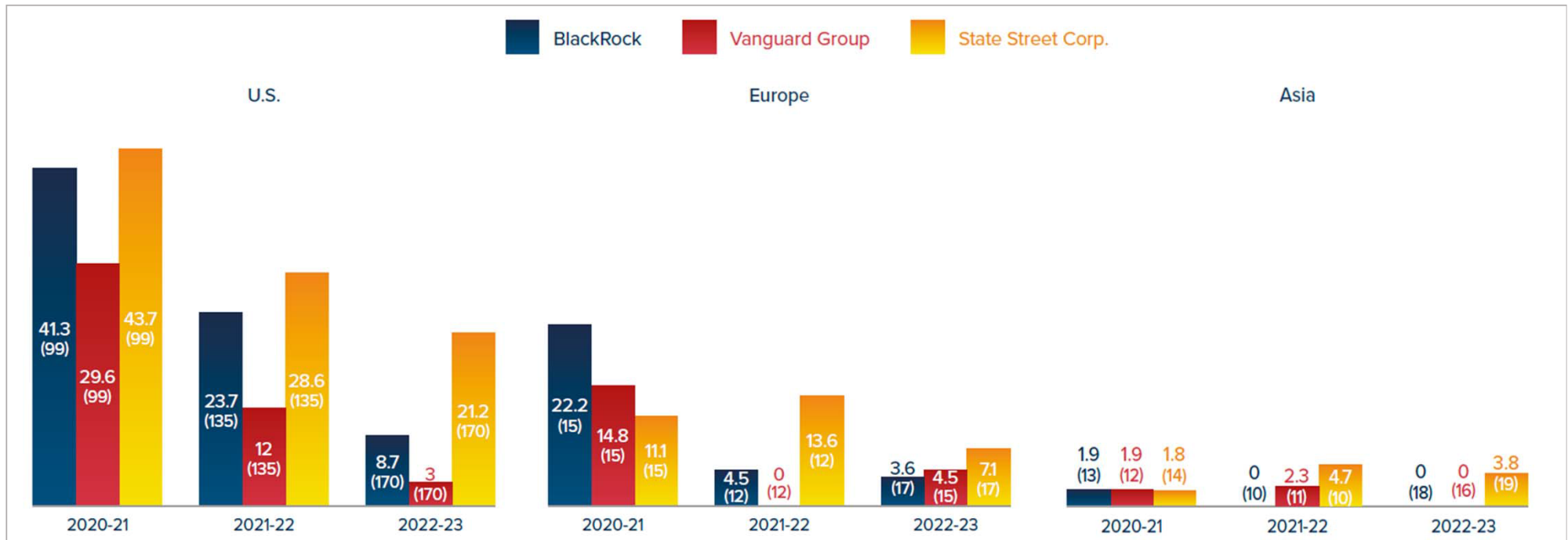
Firm ditches ETF business and takes stake in miner Vale two years after winning proxy battle



Chris James, Engine No. 1 chief investment officer © FT montage/Harry James Relf/Winni Wintermeyer

글로벌 Big3 E&S 주주제안 지지율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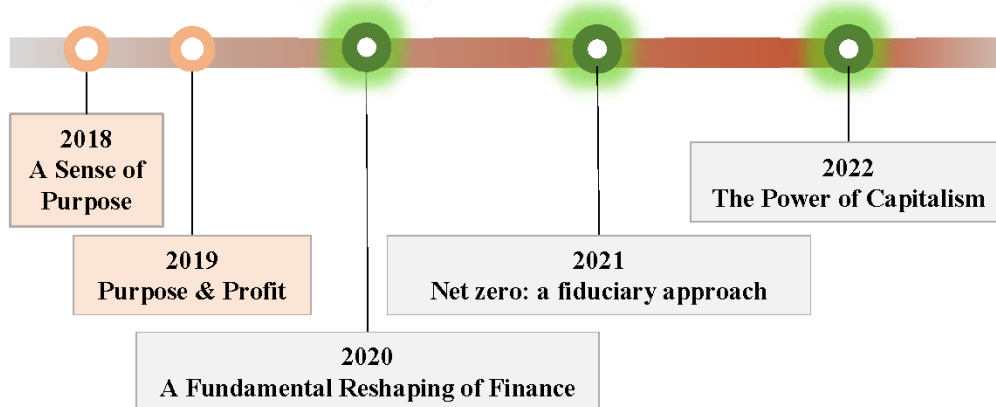
- 블랙락·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 환경·사회 주주제안 찬성률



출처: Diligent

ESG 를 둘러싼 혼란 (1)

■ 블랙락 CEO 래리 핑크의 신년 편지



■ 백래시



Activist investor calls for BlackRock CEO Fink to step down over ESG 'hypocrisy'



BlackRock's Fink says he's stopped using 'weaponised' term ESG

< FT 2023.11.7일 기사 >

“BlackRock set to invest \$550mn in Occidental direct air capture project”

BlackRock is investing through its fourth global infrastructure fund, which focuses on climate-related projects. Last year it raised \$4.5bn towards an eventual \$8bn goal from global pension funds, insurance companies and sovereign wealth funds. BlackRock said it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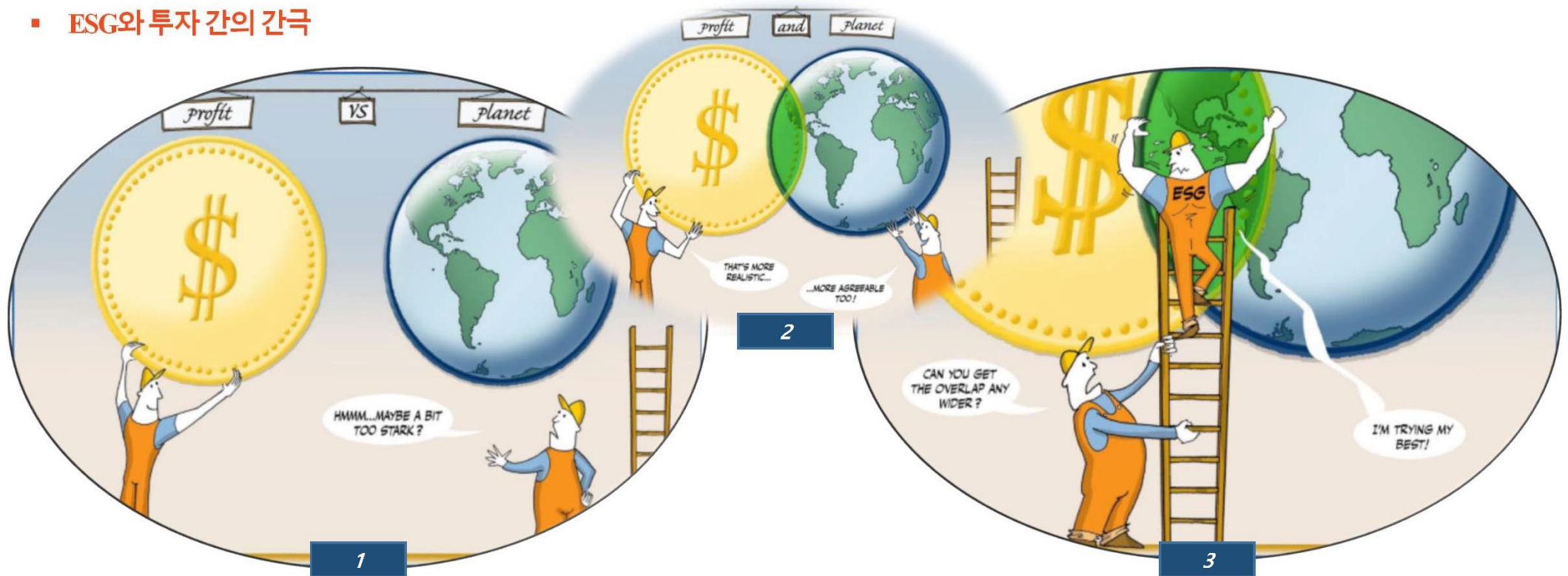
investing in the Occidental project because of the potential for big returns.

"Occidental's technical expertise brings unprecedented scale to this cutting-edge decarbonisation technology," said Larry Fink, head of BlackRock.

The \$9.1tn money manager's us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investing has made it a target for Republican politicians, who accuse it of boycotting fossil fuel and being "woke". Climate activists, meanwhile, are angry that BlackRock voted against most climate-related shareholder resolutions this year, saying the proposals were overly prescriptive. ***BlackRock and Fink insist that the fund manager puts investor returns and requirements first.***

ESG 를 둘러싼 혼란 (2)

■ ESG와 투자 간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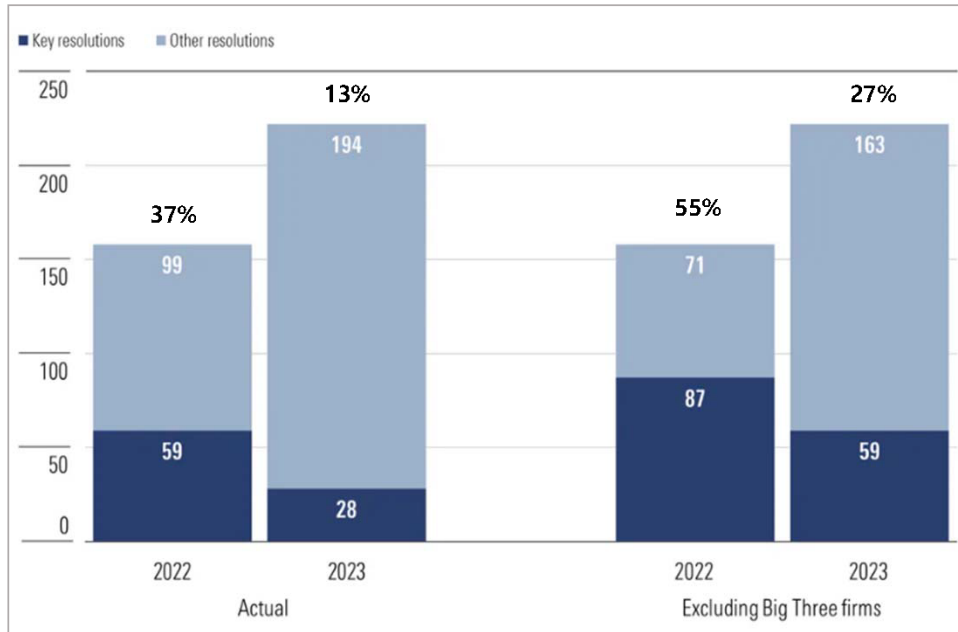


출처: The History of the ESG Movement - Duncan Austin, Illustrations by Matt Tweed

글로벌 Big3를 제외한 E&S 주주제안 지지율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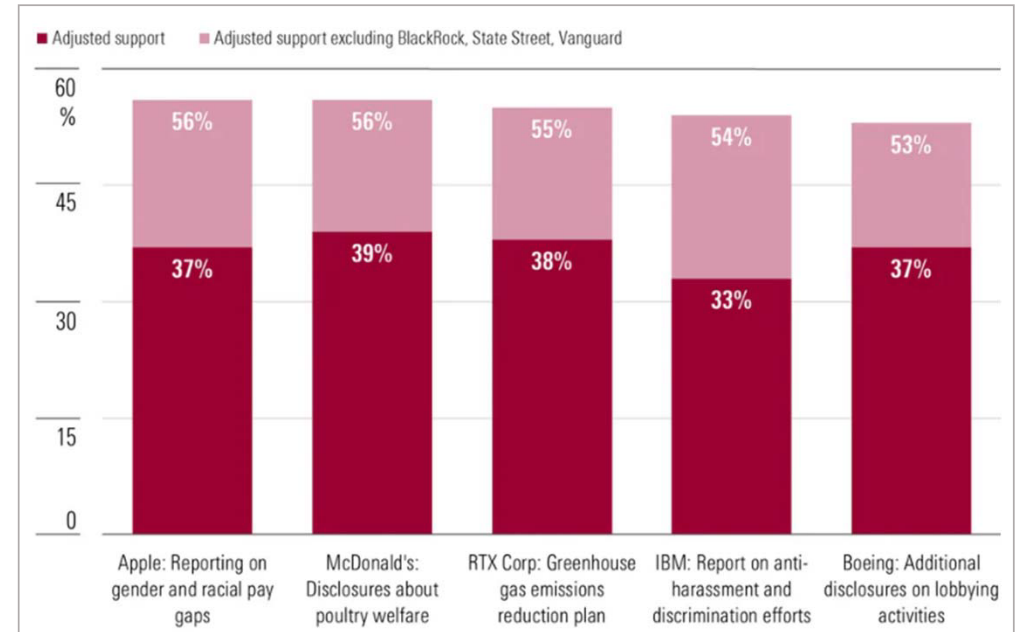
미국 S&P 100 기업 E&S 주주제안 관련 시나리오 분석

※ Key resolutions receive at least 40% adjusted support



출처: Morning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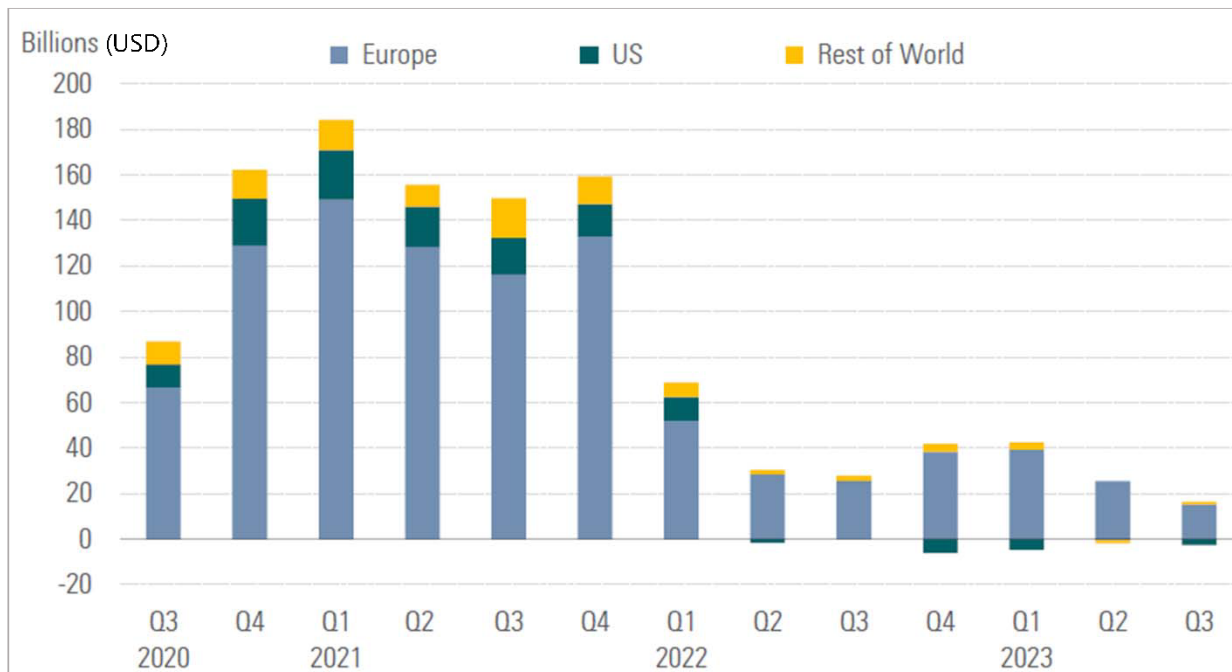
글로벌 Big3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2023년 주주제안 5건



출처: Morningstar

지속되는 유럽 發 ESG 투자

■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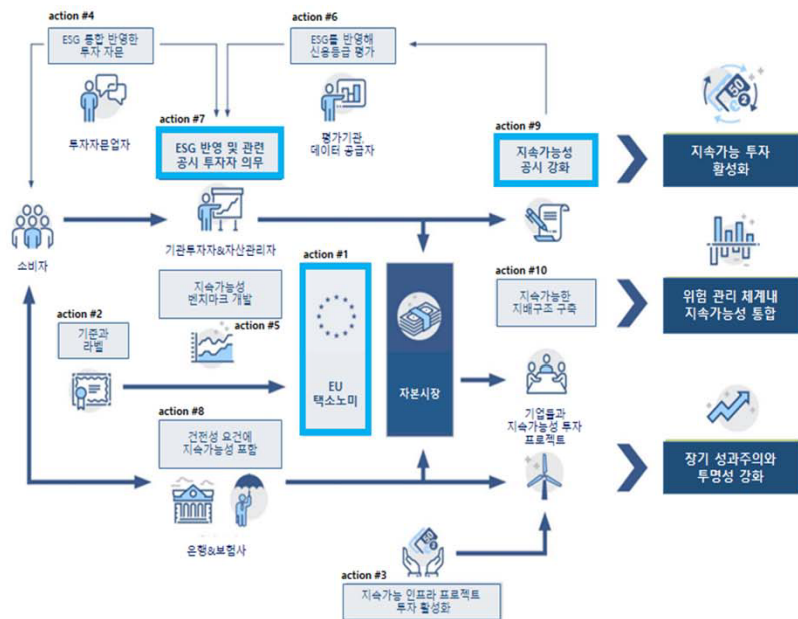
출처: Morningstar

2023 Q3	Flows USD Billion	Assets		Funds	
		USD Billion	%	#	%
유럽	15.3	2,293	84	5,608	73
미국	- 2.7	299	11	661	9
아시아 (일본 제외)	2.0	67	2	539	7
호주/ 뉴질랜드	0.0	31	1	268	4
일본	- 0.9	23	1	236	3
캐나다	- 0.1	31	1	336	4
합 계	13.7	2,744		7,648	

출처: Morningstar

EU가 선도 중인 ESG 규제 (1)

■ EU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2018)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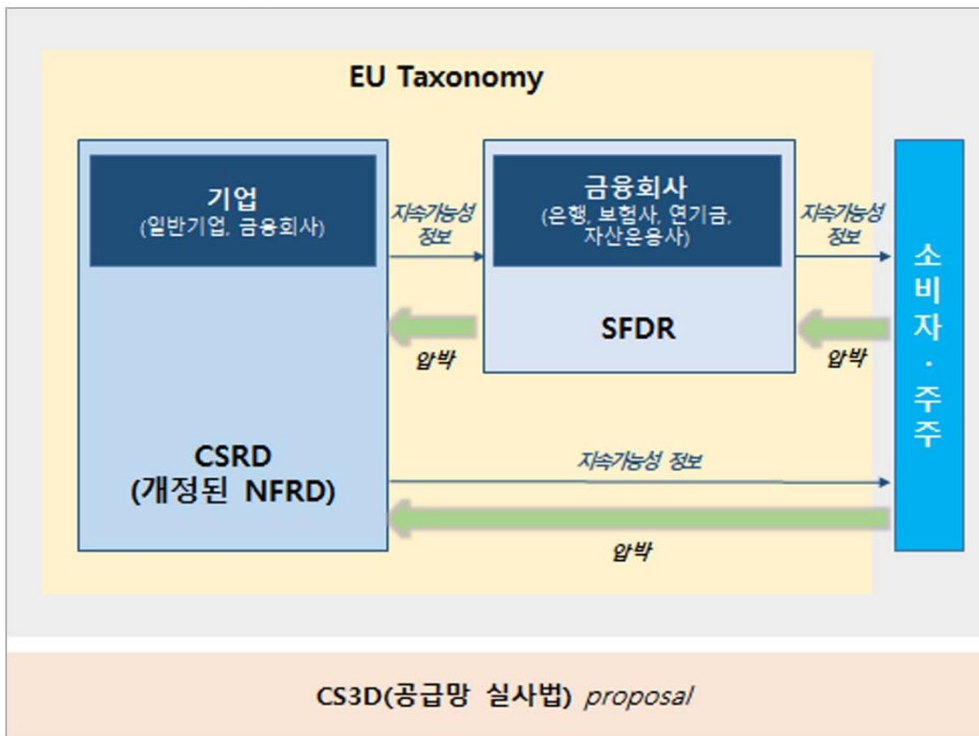
■ EU 그린딜 추진 현황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가 선도 중인 ESG 규제 (2)

■ EU : Taxonomy · SFDR · CSRD · CSDDD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1·S2)



시 사 점

2024 주주권 행사 분야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업그레이드' 되는
행동주의 투자 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정책 → 현재 급증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
 - * 벤치마킹 가능성 높은 일본의 경우 2023. 3월 기준 활동 중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수가 233개로 사상 최고치 기록,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preqin)
- * 국내기업에 대해 토종 행동주의 펀드 외에 해외 펀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상황, 최근 행동주의 펀드 공격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떼 현상(swarming, 스워밍)' → 대기업 타깃 빈도 및 대응 전략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
- * 미국 중심으로 행동주의 전략과 전통적인 PEF 전략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흐름 → 향후 국내에서도 PEF의 행동주의적 접근 및 PEF와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 내지 상호작용을 주시할 필요
- * ESG 관련 미국과 EU 간 온도 차 → 탄소배출 감축 및 인권 이슈 여전히 중요

Prevention of, or response to, an activist attack is an art, not a science. There is no substitute for preparation.

Martin Lipton, Wachtell, Lipton, Rosen & Katz

감사합니다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